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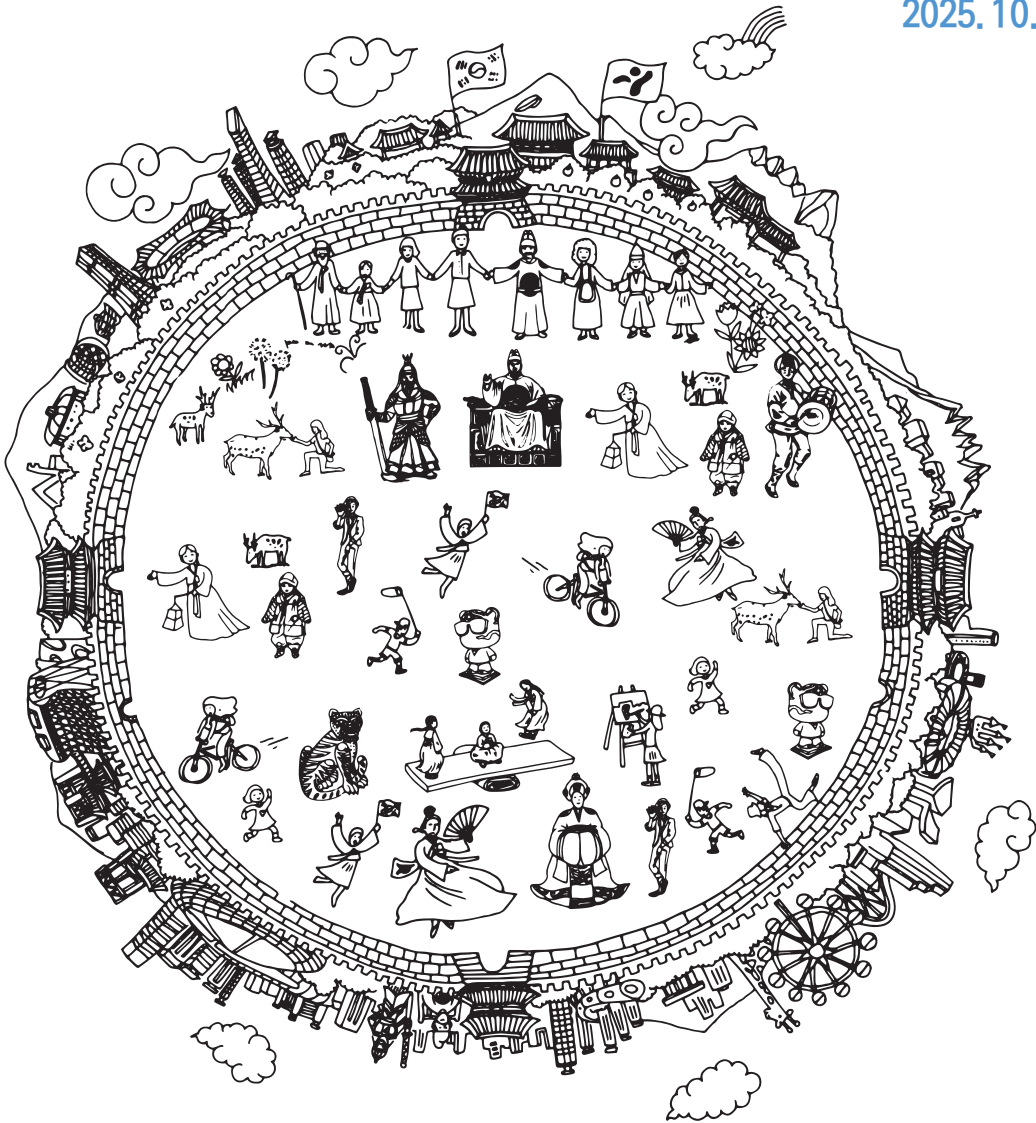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01호
2025. 10. 17.(금)



목 차

◆ 공 고

제2025-2972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2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972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조례안 (11건)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5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창의규제담당관)
	6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실 (창조산업과)
	7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8	서울특별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9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실 (돌봄복지과)
	10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1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동의안 (21건)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3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발전시설 출자시행 동의안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4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운용본부)
	5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교통실 (도시철도과)
	6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행정국 (대외협력과)
	7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8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9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10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1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12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13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14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15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정원도시국 (조경과)
	16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정원도시국 (조경과)
	17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정원도시국 (조경과)
	18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정원도시국 (조경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1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주택실 (주택정책과)
	2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주택실 (주택정책과)
	2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의견 청취안 (5건)	1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 견청취안 - 한국체육대학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가톨릭대학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행정재산의 수의허가와 관련하여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도 조례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용허가가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 기준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간 공실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를 반영하여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나. 유휴재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중 재산관리총괄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유재산을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부요율을 별도로 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26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8. 28. ~ 9. 1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재무국 재산관리과 박다원 (☎ 2133-328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그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유재산 중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총괄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시유재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생략) <신설>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그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략) <신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유재산 중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총괄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시유재산

③ ~ ⑦ (생략)

에 한한다.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행정재산 수의허가 제한 문제 해소와 유희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대 부요율 조정 근거 마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을 반영한 조례 정비로 기술적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재무국 재산관리과 박다원 (☎ 2133-328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별표 1 시립청소년시설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및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해 별표 2의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 추가(안 제2조)
- 나.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13세 → 9세)(안 제8조제2항제7호)
- 다.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제8조제2항제9호)
- 라. 청소년시설의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 현행화(안 별표 1)
- 마.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한 용어 개선(안 별표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있음(반영)

〈 미 반 영 〉

- ▶ (안 제4조)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류를 청소년 보호시설로 변경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시설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별표1)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소도 시설로 표기 요청
⇒ 재구조화에 따라 대표센터 외 분소는 부서단위로써 민간위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 (별표1)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주사무소 위치 변경(마포구 → 중구)
⇒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마포센터가 대표센터로 기능하며, 주사무소 변경 이유가 없음

〈 반 영 〉

- ▶ (별표1) 자립지원관 및 강북일시청소년쉼터 위치 정정 요청
⇒ 시설의 위치 현행화를 위해 반영

(2)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최현수 (☎ 2133-411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을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를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비숙박시설 :”을 “비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숙박시설 :”을 “숙박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13세”를 “9세”로, “경우 : 월 사용료”를 “경우: 월 사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를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의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설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거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동의를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종로구	시립종로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서북)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서남)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북)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6
	종량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림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	시루봉로 15길 93 외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영신로 200
	양천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포함)	남부순환로54길 37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길음로7길 20
3의3. 기타 청소년 시설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여의대방로20길 33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분\사용료	대 상	1회(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청소년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유아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청소년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유아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청소년 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 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 고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 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 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 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 이상 2) 청소년 : 9~24세 3) 유아 : 8세 이하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시설 이용수업	성인	31,000	43,000	56,000	68,000	81,000	93,000	
	청소년 이하	25,000	37,000	50,000	62,000	72,000	80,000	
외국어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청소년 이하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예체능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118,000	
	청소년 이하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취미·교양 문화 등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4,000	
	청소년 이하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비

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 4)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성인 : 25세 이상
- 2) 청소년 : 9~24세
- 3) 유아 : 8세 이하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인실	침대(1 bed)	50,000	52,000	52,000	54,000	
	객실(1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객실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객실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객실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객실	160,000	180,000	18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임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비 고	1. 이용료 할증 : 금, 토, 공휴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u>뜻은</u> ----- ----.
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u>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u>	1. ----- ----- <u>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략)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밖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u>	② <u>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u>	④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시
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숙박시설 : 09:00~22:00

2. 숙박시설 : 24시간

② (생략)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
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
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
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략)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

-----.

제7조(사용시간 등) ① -----

-----.

-----.

1. 비숙박시설: -----

2. 숙박시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

----- 범위-----

-----, ----- 시장-----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9세 -----

----- 경우: 월 사용료의 --

0분의 10 감면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 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

8. -----

-- 경우: -----

9.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 -----

<삭 제>

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
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
례」를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
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
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
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
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
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서울특별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 범위-----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아니한 사항은 「서
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

관한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
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
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
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
회의 사업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

----- 범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
회의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앞 쪽)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한 손실 보전금 증액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7호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13~55세 여성에서 9~55세 여성으로 확대
(9~12세 여성에 대한 감면 손실 보전금 추가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 24년 1년간 청소년센터 수영장을 이용한 만 9~12세 여성 청소년의 사용료
납부금액 총 합계의 10%(감면율) 산출, ' 24년 대비 ' 25년 시립청소년센터
전체 감면(저소득, 다둥이 등 기 추진 중인 감면) 금액의 증가율 1%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청소년시설 9~12세 여성 감면 손실 보전금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소계(a)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총 비용(a-b)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0	0	0	0	0	0
시비	지방세수입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등	0	0	0	0	0	0
민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5.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2133-412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4년 타 감면(저소득, 다둥이 등)을 받지 않은 만 9~12세 여성 청소년의 연간 수영장 사용료 총 납부금액의 10% : **33,959,971원**

(단위 : 원)

연번	센터명	'24년 9~12세 여성 수영장 사용료 납부내역(A)	감면 손실 보전금 예상 내역(B=A/10)
계		339,599,710	33,959,971
1	강북청소년센터	13,070,000	1,307,000
2	구로청소년센터	47,769,300	4,776,930
3	금천청소년센터	11,835,130	1,183,513
4	노원청소년센터	62,430,850	6,243,085
5	동대문청소년센터	14,037,000	1,403,700
6	마포청소년센터	36,259,870	3,625,987
7	망우청소년센터	3,616,000	361,600
8	목동청소년센터	10,537,000	1,053,700
9	문래청소년센터	48,893,010	4,889,301
10	서대문청소년센터	35,856,400	3,585,640
11	성동청소년센터	8,100,000	810,000
12	성북청소년센터	17,488,150	1,748,815
13	수서청소년센터	3,279,600	327,960
14	은평청소년센터	26,427,400	2,642,740

※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 중 14개소만 수영장 운영

2. ' 24년 청소년센터 전체 감면금액 대비 ' 25년 감면(예상)금액 증가율
: 약 1%

(단위 : 천원)

' 24년 감면금액	' 25년 감면 예상금액	증가금액(증가율)
3,016,612	3,049,997	33,385(1%)

⇒ 33,959,971원 × 101% = 약 34,30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원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능 수행을 명확히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및 해촉기준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내용 명확화(안 제1조 ~ 제3조)

나.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강화(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청원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중대 (☎2133-312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3.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그 시행

제2조제4호 중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 등”을 “감사,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2항제10호 이외의 사항
-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직한 자”를 “재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 로, “경력자” 를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로” 를 “사람으로” 로, “있는 자” 를 “있는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청원법」 제5조” 를 “「청원법」 제5조”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5조” 를 “제27조”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 을 “제8항” 으로 한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옴부즈만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3.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그 시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신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5. (현행과 같음)

6.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감사,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등-----

-----.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다음 각

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
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 위
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임명한다.

호의

-----. 다만, 제2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
는 경미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
2항제10호 이외의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
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
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
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
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
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
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
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
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생 략)

③ (생 략)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 활동
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 7. (생 략)

8. 「청원법」 제5조에 따른 청

1. -----

-- 재직한 사람

2. -----
----- 사람으로서
----- 경력이
있는 사람

3. -----

-- 사람

4. -----

----- 사람

5. -----
---- 사람으로 -----
----- 있는 사람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청원법」 제5조-----

원사항에 대한 조사

③ (생 략)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 5. (생 략)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8. (생 략)

③ (생 략)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①·② (생 략)

③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계약업체 선정에 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위원의 참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이나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7.·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5조-----
-----.

④ ~ ⑦ (생 략)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생 략)

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
위-----.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단서 삭제>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

<u><신 설></u> <u>⑥ · ⑦</u> (생 략) ⑦ 시민참여음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u>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음부즈만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 5.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참여음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⑦ 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⑧ · 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 ----- -- 제8항----- ----- ----- --.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능 수행을 명확히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및 해촉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중대 ☎ 02-2133-312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AISW융합교육원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 첨단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마련

나.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폐지(안 제7조제1항제5호)

－ 사회공헌 기능을 ‘기획처’ 산하 ‘대외협력과’로 이관하여 대외협력 기능과의 연계성 및 실행력 강화

다. 체육관 명칭을 스포츠건강진흥원으로 변경(안 제7조제1항제7호)

－ 건강·체육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8. 29. ~ 9. 1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최병찬 (☎ 2133-673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후단 중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2조의2”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AI·SW융합교육원
- 7. 스포츠건강진흥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총장) ①·② (생략)	제3조의3(총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 --. ----- ----- 「교육공 무원임용령」 제12조의2-----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①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u>	5. <u>AI·SW융합교육원</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체육관</u>	7. <u>스포츠건강진흥원</u>
8. ~ 12. (생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시립대 조직개편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이 없어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행정6급 최병찬(☎ 2133-6739)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기업·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혁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기본조례」로 변경함
- 나. 조문의 구성을 당초 18조에서 6장 및 28조로 세분화하여 조문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함
- 다. 시장의 ‘규제혁신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개선할 책무 등을 명시함 (안 제3조)
- 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 마. 시민·단체·공무원 등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의 요청 등’ 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
- 바. 규제혁신 정책의 신뢰도·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자문 및 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설치 근거를 신설함 (안 제10조)
- 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혁신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함 (안 제12조)
- 아. ‘공무원의 책임 등’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를 명문화하여 공무원에게 규제혁신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안 제2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5. 9. 24. ~ 9.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창의규제담당관 강동주 (☎ 2133-776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기본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규제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규칙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조(규제의 심사) ① 시장은 조례·규칙 등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 등)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 처리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의 정비·혁신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및 기준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각 실·본부·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 정비의 요청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비 요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행정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규제혁신 자문심사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생활, 경제활동 등에 관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제안하고 규제의 완화·폐지,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등 사항을 자문 및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단에 총괄 및 사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사단 구성·운영과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심사단 수당 등) 심사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① 시장은 신산업·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해당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특례 관계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안전·생명·건강에 대한 위해 여부, 환경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산업·민생분야의 혁신성·안전성 및 그에 따른 이용자 편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범 운영기간 등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3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중요규제의 신설·강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3.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규제총괄관, 규제개혁 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장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1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맡는다.

제21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총괄관

제22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혁신의 전략수립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

런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3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혁신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혁신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2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앞 쪽)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라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을 설치·운영하고 위촉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위촉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산정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비용을 추계
- 비용은 2025년 9월부터 발생하고 향후 5년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심사단 수당	30,400	91,200	91,200	91,200	91,200	395,200
	○ 회의 운영비	530	1,600	1,600	1,600	1,600	6,930
	소계(a)	30,930	92,800	92,800	92,800	92,800	402,130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30,930	92,800	92,800	92,800	92,800	402,130

※ 심사단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에 근거하여 추계

－ 총괄분과 참석수당(연간) : 200,000원 × 2회/월 × 12개월 × 9명 = 43,200천원

－ 사업분과 심사수당(연간) : 100,000원 × 4개분과 × 10건/월 × 12월 = 48,000천원

※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9월(4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30,930	92,800	92,800	92,800	92,800	402,13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0,930	92,800	92,800	92,800	92,800	402,130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기획조정실 규제개선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 김남욱

규제개선1팀장 이소현

담 당 자 이형주(02-2133-0169, brolee1041@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심사단 운영비용(합계) ≍ 402,130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5~2029) 비용의 합산

: 92,800천원* × 4년('26.~'29) + 30,930천원('25.9~12.)

≍ 371,200천원 + 30,930천원 ≍ 402,130천원

※ 연간 심사단 운영 비용: 92,800천원

－ 총괄분과 참석수당 : 200,000원 × 2회/월 × 12개월 × 9명 = 43,200천원

－ 사업분과 심사수당 : 100,000원 × 4개분과 × 10건/월 × 12월 = 48,000천원

－ 회의 운영 및 자료제작 등 : 1,600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산업 지원시설로서 서울영화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위치 규정
- 나. 영상산업 지원시설 상영관 관람료 및 그 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
- 다. 영상진흥위원회 관련 위원회 필수 규정 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영상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
 -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경제실 창조산업과 유승훈 (☎ 2133-921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관 부서장이 된다”를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세부 운영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⑬ 영상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를 “시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6.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 수강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영화센터의 위치(제9조제3항 관련)

이름	주소
서울영화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별표 2]

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제9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관람료 부과기준
• 상영관 관람료	개인: 5,000원 ~ 15,000원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2. (현행과 같음)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 -----, -----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⑥ -----

---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

<신 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생략)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⑬ 영상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⑭ -----
세부 운영에 -----
-----.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

----- 시
에 -----
한정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

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
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
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6.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
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
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
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④ 시장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 수강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

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별 표 1]

서울영화센터의 위치(제9조제3항 관련)

이름	주소
서울영화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별 표 2]

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제9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관람료 부과기준
• 상영관 관람료	개인: 5,000원 ~ 15,000원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위원회 규정 정비, 단순 문구 수정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경제실 창조산업과 유승훈 (☎ 2133-9212)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조성 중인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운영 및 기능,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개관 및 휴관, 이용제한, 이용료,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 홍보단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있음(반영)

－ 의견내용 : 주관부서 갈등관리 필요사업

－ 반영사항 : 테마파크가 설치될 위치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조성 추진위원회 운영 중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윤 민 (☎ 02-2133-764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차별화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테마파크”란 사람과 반려동물이 휴식,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원지, 공원 등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야영장 시설, 운동시설, 교육 관련 시설, 편의시설, 지원 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교감하는 휴식공간 제공
2.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복지향상 및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테마파크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테마파크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테마파크의 운영 성과분석
2. 테마파크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3. 테마파크의 시설물 점검 결과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행사 준비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객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테마파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4. 테마파크의 이용목적과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람과 동물의 안전 유지와 공공질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① 테마파크의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이내에서 각각 감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 또는 테마파크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테마파크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테마파크 운영업무 소관 부서장, 테마파크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1명

2. 위촉직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반려동물, 교육, 관광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반려동물, 교육, 관광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마. 테마파크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지방의회가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를 따른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테마파크 운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모집하여 홍보단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용료

1.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오토 캠핑장	1사이트 기준(1일)	50,000 ~ 100,000원	이용료의 가산, 할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글램핑 캠핑장	4인 기준(1일)	160,000 ~ 340,000원	
카라반 캠핑장	4인 기준(1일)	160,000 ~ 340,000원	
캠핑장 물품 대여료	바비큐존(1일)	10,000 ~ 40,000원	
	야영텐트(1일)	5,000 ~ 30,000원	
수영장	소형견(1회)	10,000 ~ 20,000원	
	중형견(1회)	15,000 ~ 30,000원	
	대형견(1회)	12,000 ~ 40,000원	
	견주(1회)	11,000 ~ 25,000원	
반려견 셀프 목욕방	소형견(1회)	7,000 ~ 20,000원	
	중형견(1회)		
	대형견(1회)		
반려견 호텔	1시간	3,000 ~ 10,000원	
	종일	25,000 ~ 110,000원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반려견 놀이터	소형견(1일)	3,000 ~ 7,000원	이용료의 가산, 할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중형견(1일)	5,000 ~ 8,000원	
	대형견(1일)	6,000 ~ 10,000원	
	견주(1일)	3,000 ~ 7,000원	
다목적 잔디마당	소형견(1일)	3,000 ~ 7,000원	
	중형견(1일)	5,000 ~ 8,000원	
	대형견(1일)	6,000 ~ 10,000원	
	견주(1일)	3,000 ~ 7,000원	

3. 학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교육 수강료	1회당	5,000 ~ 15,000원	이용료의 가산, 할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붙임]

(앞 쪽)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7년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완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지출	◦테마파크 조성	15,882	31,803				47,685
	◦테마파크 운영				1,337	1,337	2,674
	소계(a)	15,882	31,803		1,337	1,337	50,359
수입	◦테마파크 운영				4,335	4,335	8,670
	소계(b)				4,335	4,335	8,670
□ 총 비용(a-b)		1,5882	31,803		-2,998	-2,998	41,68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5,882	31,803		1,337	1,337	50,359
	세외수입				4,335	4,335	8,670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5,882	31,803		5,672	5,672	59,029

5. 덧붙이는 의견

- 물가상승률, 설계내용 등에 따라 지출비 변동 가능성 존재
- 운영방식, 운영내용, 원가계산 결과 등에 따라 수입액 변동 가능성 존재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윤 민 주무관(2133-764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참고(조성비)
- 경기 북부권 서울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참고(운영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조성 중인 서울특별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공설동물장묘시설 내 동물전용 봉안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공설동물장묘시설 내 금지행위, 변상조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임의처리 전 반려동물 유가족에게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기한 내 통지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의처리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 수정 및 신설 권고

－ 반영사항: 반영완료(안 제6조제3항~제6조제5항)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있음(반영)

－ 의견내용: 주관부서 갈등관리 필요사업

－ 반영사항: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될 위치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조성추진위원회 운영 중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윤 민 (☎ 02-2133-764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동물전용 봉안시설”이란 봉안당, 봉안담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운영 및 반려동물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성과분석
2.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3.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시설물 점검 결과 및 관리방안
4.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기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 또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동물전용 봉안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 내 동물전용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총 10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의 사실을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통지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된 반려동물의 유골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금지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동물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제8조(변상조치) 시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속 기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영업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비 고
화장	일반화장	1마리	120,000 ~ 290,000원	무게(kg)를 기준으로 기본 이용료를 산정하 되, 초과된 무게만큼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장례	기본 장례	1마리	240,000 ~ 500,000원	1. 장례비용에는 화장, 염습, 수의, 관이 포 함된다. 2. 고급 장례에는 기본 장례에 더불어 오동 나무관과 유골함 등이 포함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장례용품이 제공된다. 3. 최고급 장례에는 기본 장례에 더불어 오 동나무관과 유골함과 보자기와 액자와 헌 화가 포함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장례용 품이 제공된다.
	고급 장례	1마리	360,000 ~ 720,000원	
	최고급 장례	1마리	520,000 ~ 1,010,000원	
봉안	일반 봉안당	1마리	80,000 ~ 350,000원	봉안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고급 봉안당	1마리	120,000 ~ 500,000원	
	프리미엄 봉안당	1마리	160,000 ~ 720,000원	
운구 서비스		1마리	60,000 ~ 200,000원	편도로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스톤제작		1마리	200,000 ~ 1,100,000원	화장 후 수습한 유골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 다.

[붙임]

(앞 쪽)

서울특별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7년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완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지출	○ 추모관 조성	2,507	6,085				8,592
	○ 추모관 운영				810	810	1,620
	소계(a)	2,507	6,085		810	810	10,212
수입	○ 추모관 운영				1,404	1,404	2,808
	소계(b)				1,404	1,404	2,808
□ 총 비용(a-b)		2,507	6,085		-594	-594	7,40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2,507	6,085		810	810	10,212
	세외수입				1,404	1,404	2,808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507	6,085		2,214	2,214	13,020

5. 덧붙이는 의견

- 물가상승률, 설계내용 등에 따라 지출비 변동 가능성 존재
- 운영방식, 운영내용, 원가계산 결과 등에 따라 수입액 변동 가능성 존재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윤 민 주무관(2133-764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참고(건립비)
- 경기 북부권 서울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참고(운영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4.3.26.) 및 시행(' 26.3.27.)에 앞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돌봄 통합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1조~제3조)
 나. 시장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의무(안 제4조)
 다. 통합지원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마.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정(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연번	의견 내용	반영계획
1	제2조(정의)제2항에 다 항목 추가 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신설>	○ 미반영 - 조례안 제2조(정의)제2호 다 항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는 이에 포함됨
2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1항에 문구 추가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이하생략) ②~⑤(생략)	○ 미반영 - 법 시행령안 제5조(종합판정 등)은 “대상자의 노쇠, 장애의 정도 등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영위능력, 질병여부 등 의료서비스 필요성,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로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안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제3항은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 제공기관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제공 계획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종합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함
3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3항 신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시 성별, 연	

연번	의견 내용	반영계획
	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8. 7. ~ 8. 27.) 결과: 의견있음(일부반영)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약사회	- 제7조(협의체의 구성)에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참여 명문화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1항 제1호에 “방문 진료·간호” 뒤에 “약물관리” 또는 “약물관리(복약지도 등)” 명시 - 조례 전반의 “의료” 를 “보건의료” 로 통일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제1항에 퇴원환자·장애인·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지원 명시	- 미반영 - 제7조(협의체의 구성)제4항 각 호에 해당될 수 있음 - 일부반영 : “복약지도” 추가 -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보건의료)에 복약지도가 규정되어 있음 - 미반영 - 조례 전반의 내용은 돌봄통합지원법과 일관성있게 규정함 - 미반영 - 조례안 제5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포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 제1조(목적) 권리성 명문화 “~서울시민의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제2조(정의) “연령·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서울시민”으로 대상자 보편화 - 제7조(협의체의 구성)에 노동자 대표 및 돌봄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대표 참여 보장	- 미반영 - 법령의 제정이유와 목적에 맞게 기술한 것임 - 미반영 - 법 시행령안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는 1. 65세 이상의 자 2.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 - 미반영 - 제7조(협의체의 구성)제4항 각 호에 해당될 수 있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공공 직접 제공 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역할 명시 -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포함 및 종사자 권익보호 명시 - 제○조(서울시 돌봄기금 설치) 조항 신설 요구	- 미반영 - 통합지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민간의 돌봄서비스 품질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하고자 함 - 미반영 -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기술함 - 한편, 우리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정하고 있음 - 미반영 - 서울시 돌봄기금 설치의 별도의 조례 제정 및 장기검토가 필요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제○조(지역케어회의) 조항 신설을 통한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미반영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에 따라 자치구에서 정하는 조례로 “통합지원회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결과 반영 강행규정 및 결과 공개나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 미반영 - 법 시행규칙안 제6조(지역계획 추진성과 보고 및 평가 등)는 임의규정임 - 법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제2항 및 시행령안 제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연구원 약자동행센터	제2조제2항 중 가의 노인 연령기준에서 노인등으로 수정 필요	- 미반영 - 법 시행령안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복지실 돌봄복지과 김정미 (☎ 2133-737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통합지원 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시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김정미 (☎ 2133-7376)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동일한 법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이 2개의 조례로 규율되고 있어 법령과 자치법규의 통합성 및 시민 이해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자치법규로 통일하고,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기능·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2~제4조의4)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 삽입(안 제5조)

다.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라. 그 밖의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의결)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완료)

－ 조례안 제4조의3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고려에 대한 제안 사항을 수용함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12. ~ 7. 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최선미 (☎ 02-2133-767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응급환자”라 함은”을 ““응급환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응급의료”라 함은”을 ““응급의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처치”라 함은”을 ““응급처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을 ““응급의료종사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을 ““응급의료기관”이란”으로, “이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구급차”라 함은”을 ““구급차등”이란”으로, “자동차를”을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동수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을 ““응급의료기관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를”을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 관계 공무원: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및 재난대응과장

2.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3.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7조에 따른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응급의료사업”을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서울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관련”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4조 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다중 집합장소”를 “다중집합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시에”를 각각 “시에”로 하고, 같은 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병원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을 “(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서울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종자료” 를 “각종 자료” 로, “운영 할” 을 “운영할”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의 규칙” 을 “규칙”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구급차 등” 을 각각 “구급차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구급차에” 를 “구급차등에” 로, “보건복지부령” 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구급차 등” 을 “구급차등” 으로, “사유없이” 를 “사유 없이” 로, “요청 할” 을 “요청할” 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증 응급환자” 를 각각 “중증응급환자” 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소아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소아응급환자에게 매일 24시간 적정한 진료 제공
2. 소아응급환자의 전원 및 수용 체계 구축
- ② 시장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 ④ 시장은 지정된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 여부를 3년마다 검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준수 여부 및 평가 결과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서울시” 를 “시” 로, “관련단체” 를 “관련 단체”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도감독” 을 “지도·감독”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

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3조의2제3항 관련)

1. 지정 기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는 것
- 나. 최근 1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이 있을 것
- 다. 24시간 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것
- 라. 환자 전원 및 수용체계를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할 것
- 마. 그 밖에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는 것

2. 신청 자격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우리아이 안심병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 나.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 신청 방법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지정 신청서
- 나. 사업계획서
- 다. 응급실 구조 및 배치 도면
- 라. 최근 1년간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 자료
- 마. 그 밖에 소아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지정 심의

서울특별시장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응급환자”란 ----- ----- ----- ----- ----- ----- ----- -----.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 ----- ----- ----- ----- ----- -----.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3. “응급처치”란 ----- ----- -----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

4. “응급의료종사자”란 -----

-----.

5. “응급의료기관”이란 -----
-----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

6. “구급차등”이란 -----

----- 자동차, 선박 및 항공
기 등의 이동수단을 ---.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

-----.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를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9. (생 략)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
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
차등을 -----
-----.

9.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
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
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응
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
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6
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지역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
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
관련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

<신 설>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
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
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
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

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및 서

울소방재난본부 구급 관계 공

무원: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보건의료정책과장 및

재난대응과장

2.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3.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7조에 따른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신 설>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서울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관련 업무의 지원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
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전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조(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보
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
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
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8.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
의료 관련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구급차등-----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보
급 등) ① ----- 법 제14조제2항

-----.

②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홍보사업,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
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

3. (생략)

②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관리자, 설치 일시,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

1. 시-----

----- 다중집합장소 -----

2. 시 -----

3. (현행과 같음)

② ----- 시에 -----

-----.

③ ----- 시에 -----

----- 관련 기관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재난 발생시 중증의 상환자 및 재난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예비병상 및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9조(병원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10조(서울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응급의료 계획 마련, 응급의료 성과평가, 재난 대비, 응급실 감염병 관리 등 효과적인 응급의료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각종자료 수집과 취합, 관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수집정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

제8조(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발생 시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 -----

----- 각종 자료 -----

----- 운영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규칙 -----
-----.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구급차등 -----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법 제48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 구급차등-----

-----.

⑤ (현행과 같음)

⑥ -----

구급차등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⑦ ----- 구급차등-----

----- 사유 없이-----

----- 요청할 -----
-----.

제12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의료 등) ① 시장은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시설을 지정하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12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의료 등) ① ---- 중증응급환자 -----

-----.

② -----

----- 중증응급환자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소아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소아응급환자에게 매일 24시간 적정한 진료 제공

2. 소아응급환자의 전원 및 수용 체계 구축

② 시장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아응급환자

제14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서울시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자치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정된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 여부를 3년마다 검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준수 여부 및 평가 결과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 시 -----

----- 관련 단체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도·

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감독 -----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명시, 동일한 법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이 2개 조례로 규율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자치법규로 통일,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최선미 사무관(2133-7671)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2.6.) 및 시행('25.2.7.)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 조례 제정 필요하며,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4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 나. (안 제5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 다. (안 제7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 라. (안 제9조)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을 위해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 마. (안 제11조)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 바. (안 제12조)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업시행계획 내용
- 사. (안 제13조)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에 포함해서 작성해야 할 내용
- 아. (안 제16조) 분양신청 기간 종료 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자. (안 제17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평가 기준
- 차. (안 제18조) 사업시행자가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카. (안 제20조)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의무 및 공공기여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
- 타. (안 제21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시 준수해야 하는 용적률 범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자가 공급 및 분양해야 하는 주택의 면적 범위
- 파. (안 제22조) 사업시행자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사항,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서류 및 기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의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7.10.~7.30.)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진철웅 · 이상욱(☎2133-696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공공기여”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도심, 광역중심을 말한다.
4. “대중교통 결절지”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 2개 이상의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

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 “보류지”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조례를 따른다.

제2장 지구지정

제4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치: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면서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 아닌 지역 중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구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4.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요건
 -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나.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다.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치: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세권인 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전체가 역세권이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11호 및 같은 조례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공장비율 10퍼센트 미만인 지역
 2. 노후도: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
 3.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4. 영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구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5.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
 -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다.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라.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구청장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로서 시장에게 제출해야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지형도, 현황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적은 서류
 4.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이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

제3장 복합개발계획

제8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①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때 포함해야할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② 그 밖에 필요한 복합개발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준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할 것
2.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할 것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고시 예정일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것

제9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①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자·규모별 현황
3. 도시·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6.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입안 제안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입안 제안의 사실 등 공고해야할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2.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⑤ 구청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예정자(사업시행예정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중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

견정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 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의 변경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
7. 복합개발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8.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제4장 사업시행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 제1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12조(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사항 중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영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화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제13조(시행규정에 포함할 사항)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중 법 제20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복합개발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21조제8항에 의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 및 운영 중인 기존 통합심의위원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장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경관법」에 따른 시장 소속의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삭제
- ③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5.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 ⑥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⑧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⑨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⑩ 안건의 당사자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⑪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9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⑫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⑧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⑨ 공무원이 아닌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29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시 포함해야할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한정한다)
 - 다. 환지에정지 도면
 - 라. 중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3.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법 제40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운영 또는 조정 결과 등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1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평가 참여도
 4. 법규 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중 영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중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0조 및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행규정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5장 지원 등

- 제19조(용도지역 조정 및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①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계획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의거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도심복합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할 경우, 공공시설의 종류, 설치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은 “복합개발계획”으로 본다.
- 제20조(규제특례 적용 및 공공기여 기준) ① 법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해야 하며, 건설·설치하는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프라
4. 국민주택규모 주택

②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란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시기본계획 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거나, 지역의 전략적 육성 및 시 정책목표 달성 등을 위한 용도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용도를 개발하는 경우
2. 공연전시장의 건설 및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주변지역이나 불특정 다수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도가 높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할 시 설치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한 기금에 귀속한다.
- ⑤ 그 밖의 공공기여 계획 수립의 세부 기준 및 설치비용의 사용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의거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에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다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주거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100분의 50이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법 제2조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인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제2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하는 사항 중 영 제3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운영규정 및 시행규정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사업시행계획서
4. 관리처분계획서
5. 해당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6.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7.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8.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의 인계는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기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복합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으로 칭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제17조제1호 관련)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배점 : 20점)

-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계약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
- － 평가건수(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 － 평가금액(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2. 감정평가사 수(배점 : 15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서울시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평가함
- － 서울시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15점)

구 분	20명 초과	16~20명	11~15명	6~10명	5명 이하
평 점	15	14	13	12	11

3. 기존 평가참여 규모(배점 : 30점)

- 서울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시행일 이후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중전, 중후) 평가금액 및 횟수(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금액은 추정 금액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함
- － 기 참여 평가총액(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 기 참여 평가횟수(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4. 행정처분 횟수(배점 : 15점)

○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서울시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횟수를 기준으로,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정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횟수를 2배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구 분	없음	3회 이하	4~6회	7~9회	10회 이상
평 점	15	12	9	6	3

5. 평가항목 :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배점 : 10점)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의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평가에 참여한 업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함

구분	기준요율 평가수수료의 80%금액	감정평가업자가 제안한 수수료(금액)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의 80%초과 ~ 100%미만)	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금액) (100%~120%)
평점	10점	평가점수 =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 제안금액)/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 50	0점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배점 : 10점)

○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예정자가 추천한 전문가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평가대상	평가항목														
	업무추진계획(25%)					인력투입계획(25%)					사후서비스 제안정도(50%)				
평 점	10	8	6	4	2	10	8	6	4	2	10	8	6	4	2

※ 시장은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기관명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시행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시행 예정일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m ²	
	계획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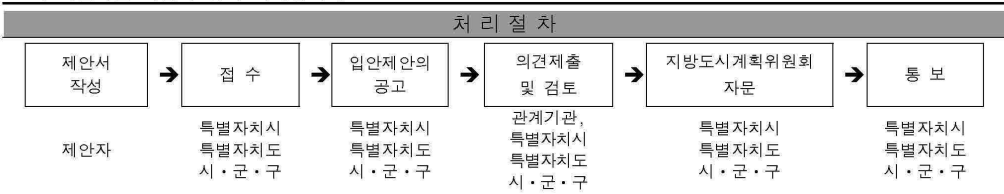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안자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
----------	---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복합개발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0 호
번호부여일자	20 . . .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상권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동의내용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지구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위 치 (요청 구역)	00동 00번지 일대	지구면적	(m ²)
----------------	-------------	------	-------------------

상기 지구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혁신지구 개요	지구명			
	지구위치	(면적 m ²)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구성일			
해제 동의 사항	① 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동의자 수 / 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0 호
번호부여일자	20 . . .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계)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상권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①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②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동의내용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지구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해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위 치 (해제요청 구역)	00동 00번지 일대	지구면적	(㎡)
------------------	-------------	------	-----

상기 지구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철회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 철회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철회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안의 철회내용	(제안 철회자 자필로 기재)		

본인은 위 제안의 철회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전에 제안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제안 철회자

(서명 또는 인)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귀하

제안 철회자 소유 토지 현황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2				
3				

첨부서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1부.

유의사항

1. 귀하(란) 앞에는 제안철회자가 철회하려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대방을 적어야 합니다.
2.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簡印)을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복합개발계획 입안 철회를 위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0 호
번호부여일자	20 . . .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상권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동의내용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철회 구역의 범위(지구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위 치 (요청 구역)	00동 00번지 일대	지구면적	(m ²)
----------------	-------------	------	-------------------

상기 지구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철회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및 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위원수당	-	18,000	18,000	18,000	18,000	72,000
	위원회 운영비	-	2,000	2,000	2,000	2,000	8,000
	소계(a)	-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수입	해당없음	-	-	-	-	-	-
	해당없음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진철웅 · 이상욱 (2133-696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위원수당 : 18,000천원 = 200천원 × 30명 × 3회
- 운영비용 : 2,000천원 = 다과비 및 위원회 운영용품 구매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5건으로 취득 11건, 처분 4건임

- 취득 11건은 매입 및 신축 등 2건, 매입취소 및 신축완료 1건, 신축 등 5건, 교환 및 신축 2건과 교환취득 1건임
- 처분 4건은 교환처분 3건과 매각 1건임

나. 취득 11건

○ 매입 및 신축 등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① 한강의 복합수난사고 대응 및 수상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한 친환경 선박 2척(30톤급 보조 예인선 1척, 50톤급 다목적 행정복합선 1척)을 대체건조하고, 전기선박의 충전이 가능한 부유식 충전 선착장(영등포구 양화동 171 선유도공원 북단, 1,000.00㎡)을 구축
- ② 당초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례지구 내 토지(1,500.0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거여119안전센터를 이전하여 신축(1,290.00㎡)하고자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건설사업관리 채택에 따른 감리비 증가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위한 공용면적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56.7% 증가(7,109백만원 → 11,140백만원)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 매입취소 및 신축완료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③ 당초 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광진 50플러스 캠퍼스(5,000.00㎡)를 신축하고자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 부지와 연접한 사유 토지(515.00㎡)와 건물(542.38㎡)을 매입하고 50플러스 동부캠퍼스와 공용주차장의 복합시설을 건립(9,770.00㎡)하는 건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가결되었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결과 매각 의사가 없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사유지 매입을 취소하고 신축(매입 및 신축 → 매입취소 및 신축완료)하였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88.9% 증가(20,258백만원 → 38,277백만원)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 신축 등 5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④ 당초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 조형물(150.00㎡)을 설치하고 국경일 기념 행사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 정체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고자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조성하여 사업비가 46.8% 감소(10,852백만원 → 5,767백만원)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 ⑤ 서북권 대표공원인 백련근린공원을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자연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산림치유센터(317.00㎡)를 조성하고, 백련산 정상부의 노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128.00㎡)를 설치
- ⑥ 서북권 서울형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봉산 근린공원 내 산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센터(600.00㎡)를 조성
- ⑦ 서남권 산림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관악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관리동(1동, 441.00㎡)과 숲속의 집(17동, 1,185.00㎡) 건립
- ⑧ 정부 재정지원의 자격요건이 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비하고자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국제학사 부지 인근에 국제학사 추가 건립(6,627.16㎡)

○ 교환 및 신축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⑨ 당초 구로세무서가 위치한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부지(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를 구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3,119.70㎡)하고, 급증하는 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를 신축(4,441.00㎡)하는 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예정 건물인 구로세무서 청사가 교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 ⑩ 광장동 광나루역 일대 미개발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등의 복합 시설(35,290.00㎡)을 건립하고, 사업부지가 시·구유지로 혼재되어 있어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체육시설 부지 내 구유지(광진구 광장동190-2 외 10필지, 11,264.00㎡)를 시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취득

○ 교환 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⑪ 북촌한옥마을 내 공공한옥에 대한 한옥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주민·문화시설용 한옥(종로구 계동 72, 은평구 진관동 182(부지))을 市 소유의 주거용 한옥과 교환하여 취득(토지 532.40㎡, 건물 128.93㎡)

다. 처분 4건

○ 교환 처분 3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⑫ 당초 영등포구에 위치한 구로세무서가 구로구 내 시유지인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구로구 고척동 350-2, 3,300.20㎡)로 이전함에 따라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구로세무서 부지와 교환하여 처분하는 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

었으나

구로세무서 청사가 교환취득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함에 따라 관리계획 재수립하여 재상정

- 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내 시유지와 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부지 내 시유지(광진구 광장동189-5 외 22필지, 12,425.00㎡)를 구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처분
- ⑭ 북촌한옥마을 내 공공한옥에 대한 한옥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市 소유의 주거용 한옥(종로구 가회동 35-2 외 4필지, 토지 636.00㎡, 건물 206.27㎡)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주민·문화시설용 한옥과 교환하여 처분

○ 매각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⑮ 서대문구에서 재활용센터 부지로 사용중인 시유지(서대문구 홍은동 425 외 1필지)와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대문구 내 시유지(서대문구 홍은동 424-1 외 1필지)를 서대문구에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매각 요청함에 따라 매각(1,016.10㎡)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11건

- 매입 및 신축 등 2건 : 선박 2척(30톤급, 50톤급), 공작물 1,000.00㎡
토지 1,500.00㎡, 건물 1,477.53㎡
- 매입취소 및 신축완료 1건 : 토지 515.00㎡, 건물 11,586.64㎡
- 신축 등 5건 : 건물 등 9,665.16㎡
- 교환 및 신축 2건 : 토지 14,383.70㎡, 건물 44,104.76㎡
- 교환 취득 1건 : 토지 532.40㎡, 건물 128.93㎡

○ 처분 4건

- 교환 처분 3건 : 토지 16,361.20㎡, 건물 206.27㎡
- 매각 1건 : 토지 1,016.10㎡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① 한강의 복합수난사고 대응 및 수상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한 친환경 선박 2척(30톤급 보조예인선 1척, 50톤급 다목적 행정복합선 1척)을 대체건조하고, 전기선박의 충전이 가능한 부유식 충전 선착장(영등포구 양화동 171 선유도공원 북단, 1,000.00㎡)을 구축하고,

② 당초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례지구 내 토지(1,500.0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거여 119안전센터를 이전하여 신축(1,290.00㎡)하고자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건설사업관리 채택에 따른 감리비 증가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위한 공용면적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56.7% 증가(7,109백만원 → 11,140백만원)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③ 당초 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광진 50플러스 캠퍼스(5,000.00㎡)를 신축하고자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 부지와 연결한 사유 토지(515.00㎡)와 건물(542.38㎡)을 매입하고 50플러스 동부캠퍼스와 공용주차장의 복합시설을 건립(9,770.00㎡)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가결되었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결과 매각 의사가 없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사유지 매입을 취소하고 신축(매입 및 신축 → 매입취소 및 신축완료)하였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88.9% 증가(20,258백만원 → 38,277백만원)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④ 당초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 조형물(150.00㎡)을 설치하고 국경일 기념 행사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 정체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고자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조성하여 사업비가 46.8% 감소(10,852백만원 → 5,767백만원)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⑤ 서북권 대표공원인 백련근린공원을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자연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산림치유센터(317.00㎡)를 조성하고, 백련산 정상부의 노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128.00㎡)를 설치하고,

⑥ 서북권 서울형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봉산 근린공원 내 산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센터(600.00㎡)를 조성하고,

⑦ 서남권 산림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관악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관리동(1동, 441.00㎡)과 숲속의 집(17동, 1,185.00㎡)을 건립하고,

⑧ 정부 재정지원의 자격요건이 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비하고자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국제학사 부지 인근에 국제학사 추가 건립(6,627.16㎡)하고,

⑨ 당초 구로세무서가 위치한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부지(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를 구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3,119.70㎡)하고, 급증하는 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를 신축(4,441.00㎡)하는 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예정 건물인 구로세무서 청사가 교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⑩ 광장동 광나루역 일대 미개발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등의 복합 시설(35,290.00㎡)을 건립하고, 사업부지가 시·구 유지로 혼재되어 있어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체육시설 부지 내 구유지(광진구 광장동 190-2 외 10필지, 11,264.00㎡)를 시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고,

⑪ 북촌한옥마을 내 공공한옥에 대한 한옥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주민·문화시설용 한옥(종로구 계동 72, 은평구 진관동 182(부지))을 市 소유의 주거용 한옥과 교환하여 취득(토지 532.40㎡, 건물 128.93㎡)하고,

⑫ 당초 영등포구에 위치한 구로세무서가 구로구 내 시유지인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구로구 고척동 350-2, 3,300.20㎡)로 이전함에 따라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구로세무서 부지와 교환하여 처분하는 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구로세무서 청사가 교환취득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함에 따라 관리계획 재수립하여 재상정하며,

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내 시유지와 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부지 내 시유지(광진구 광장동189-5 외 22필지, 12,425.00㎡)를 구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처분하고,

⑭ 북촌한옥마을 내 공공한옥에 대한 한옥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市 소유의 주거용 한옥(종로구 가회동 35-2 외 4필지, 토지 636.00㎡, 건물 206.27㎡)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주민·문화시설용 한옥과 교환하여 처분하며,

⑮ 서대문구에서 재활용센터 부지로 사용중인 시유지(서대문구 홍은동 425 외 1필지)와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대문구 내 시유지(서대문구 홍은동 424-1 외 1필지)를 서대문구에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매각 요청함에 따라 매각(1,016.10㎡)하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11건

- 매입 및 신축 등 2건 : 선박 2척(30톤급, 50톤급), 공작물 1,000.00m²
토지 1,500.00m², 건물 1,477.53m²
- 매입취소 및 신축완료 1건 : 토지 515.00m², 건물 11,586.64m²
- 신축 등 5건 : 건물 등 9,665.16m²
- 교환 및 신축 2건 : 토지 14,383.70m², 건물 44,104.76m²
- 교환 취득 1건 : 토지 532.40m², 건물 128.93m²

○ 처분 4건

- 교환 처분 3건 : 토지 16,361.20m², 건물 206.27m²
- 매각 1건 : 토지 1,016.10m²

첨 부

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이 전			금 회			합 계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취득	계	토지	-	-	2	16,931.10	60,398,344	2	16,931.10	60,398,344
		건물	-	-	8	67,963.02	330,166,022	8	67,963.02	330,166,022
		기타	-	-	1	-	6,266,000	1	-	6,266,000
		선박	-	-	1	-	6,266,000	1	-	6,266,000
	매입 및 상속 등	토지	-	-	1	1,500.00	8,920,500	1	1,500.00	8,920,500
		건물 등	-	-	-	2,477.53	15,373,935	-	2,477.53	15,373,935
	매입취소 및 상속원료	토지	-	-	-	515.00	2,918,787	-	515.00	2,918,787
		건물	-	-	1	11,586.64	40,630,822	1	11,586.64	40,630,822
	신축 등	토지	-	-	5	9,665.16	62,282,485	5	9,665.16	62,282,485
		건물	-	-	1	14,383.70	46,294,872	1	14,383.70	46,294,872
처분	교환 및 상속	토지	-	-	1	44,104.76	210,336,780	1	44,104.76	210,336,780
		건물	-	-	-	532.40	2,264,185	-	532.40	2,264,185
		토지	-	-	1	128.93	1,542,000	1	128.93	1,542,000
		건물	-	-	3	17,377.30	46,094,939	3	17,377.30	46,094,939
	교환 취득	토지	-	-	1	206.27	1,531,849	1	206.27	1,531,849
		건물	-	-	2	16,361.20	42,088,508	2	16,361.20	42,088,508
	계	토지	-	-	1	206.27	1,531,849	1	206.27	1,531,849
		건물	-	-	1	1,016.10	4,006,431	1	1,016.10	4,006,431
	매각	토지	-	-	-	-	-	-	-	-
		건물	-	-	-	-	-	-	-	-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26년 정기분)

인원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1	신박 매입 공작물 설치	영등포구	양화동	171	계				
					84,894.12 (30톤급, 50톤급)	396,830,366			
					30톤급 (70㎡)	2,700,000			
					50톤급 (90㎡)	3,566,000	2028	한강 전기관공선 매입 및 충전선차장 구축	미래환경본부 (수자원과)
				1,000.00	4,234,000				
2	토지 매입 (변경) 건물 신축 (변경)	송파구	거여동	산 30 (가치번호595-2)	1,500.00	8,920,500	(2024)	거여119인전센터 이전 및 신축 (변경)	소방제난본부 (소방행정과)
					1,477.53	11,139,935	2027		
3	토지 매입(취소) (변경) 건물 매입(취소) (변경) 건물 신축(원료) (변경)	광진구	자양동	57-153	515.00	2,918,787	-	50플러스 동부퀘퍼스 복합시설 건립 (변경)	평생교육진흥 본부 (평생교육과)
					554.32	2,353,822	-		
					11,032.32	38,277,000	2024		

영원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4	공작물 영지 설치 (민경)	종로구	세종로	1-68	367.00	5,767,000	2026	광화문관광 상징조형물 조성 (민경)	관광진흥본부 관광진흥과(관광사업과)
5	건물 신축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41	317.00	1,950,000	2027	백련근로공원 테마형 녹화환경개선 조성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작물 영지 설치	은평구	응암동	산 7-266	128.00	1,857,000	2026		
6	건물 신축	은평구	구산동	산 139-1	600.00	3,030,000	2026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7	건물 신축	관악구	신림동	산 117-24	1,626.00	12,482,857	2027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8	건물 신축	동대문구	전봉동	694	6,627.16	37,195,628	2029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학사 증축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

영원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	통	번지					
9	토지 계획 (변경)	영등포구	문래동1가	12-1	3,119.70	24,701,784	2026	서울시 국제창간 부지교환 및 사업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변경)	복지실 (아르산복지과)
	건물 계획 (변경)				4,373.76	542,424	2026		
	건물 신축 (변경)				4,441.00	22,794,356	2029		
10	토지 계획	광진구	광정동	190-2 외 10필지	11,264.00	21,593,088	2026	광정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사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건물 신축	광진구	광정동	307-3 외	35,290.00	187,000,000	2030		
11	토지 교환	은평구	진관동	182	274.50	717,817	2026	서울 공공한옥 재산교환 (시 ↔ SH)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
		종로구	계동	72	257.90	1,546,368			
	건물 교환	종로구	계동	72	128.93	1,542,000	2026		

3.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26년 정기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처분 시기	처분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1	토지 교환	구로구	교척동	350-2	17,583.57	47,626,788	2026	서울시 국제청간 부지교환 및 시립영도실버케어센터 건립 (변경)	복지실 (여르신복지과)
2	토지 교환	광진구	광정동	189-5 외 22필지	12,425.00	23,641,941	2026	광정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사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	토지 교환	종로구	기회동	35-2 외 4필지	636.00	2,767,317	2026	서울 공공주택 재산교환 (시 ↔ SH)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
4	토지 매각	서대문구	홍은동	425 외 3필지	1,016.10	4,006,431	2026	서대문구 재활동센터 부지 매각	기획경제본부 (자원순환과)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요약(' 26년 정기분)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한강 저기관공사 매입 및 중전선착장 구축	취득 (매입 및 신축)	선박	2척	30톤급(70㎡)	2,700,000
				50톤급(90㎡)	3,566,000
				공작물	4,234,000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및 신축 (변경)	취득 (변경) (매입 및 신축)	토지	1	1,500.00	8,920,500
		건물	1	1,477.53	11,139,935

- 목적 및 용도 : 수난사고 대응, 한강 홍보 등을 위한 선박 대체건조 및
친환경 선박 3척의 정박지 및 중전시설 구축

- 대 상 지 : 영등포구 양화동 171 선유도 관광선 선착장

- 사업기간 : ' 23. 8월 ~ ' 28. 3월

- 소요예산 : 10,500,000천원

- 사업규모 : 선박 30톤급(70㎡), 선박 50톤급(90㎡), 공작물 1,000.00㎡

- 기준가격 명세 : 선박 6,266,000천원, 공작물 4,234,000천원

- 계약방법 : <선박 매입> 제한경쟁입찰(설계,공사)

<공작물 설치> 제한경쟁입찰(설계,공사)

- 목적 및 용도 : 위탁탁지개발사업지구의 소방안전 시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 대 상 지 : 송파구 거여동 산 30 (가지번) 송파구 거여동 595-2

- 사업기간 : ' 23. 4월 ~ ' 27. 5월

- 소요예산 : 16,278,365천원

- 사업규모 : 토지 1,500.00㎡, 건물 1,477.53㎡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8,920,500천원, 건물 11,139,935천원

- 계약방법 : <토지매입> 수의계약(SH공사 위탁탁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설계,공사)

사업명	구분	내역			세부내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50플러스 동부권퍼스 부합시설 건립 (변경)	취득 (변경) (매입취소 및 신축완료)	토지	6	515.00	2,918,787
		건물	5	554.32	2,353,822
		건물	1	11,032.32	38,277,000
					- 목적 및 용도 : 매입계획 취소 및 기준가격 증가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 대상지 : 광진구 자양동 57-163 - 사업기간 : '15. 5월 ~ '24. 12월 - 소요예산 : 38,277,000천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취소) 515.00㎡, 건물(매입취소) 554.32㎡, 건물(신축완료) 11,032.32㎡ - 기준가격 명세 : 토지·건물(매입) 5,272,609천원, 건물(신축) 38,277,000천원 - 계약방법 : <토지·건물 매입 - 취소>, <건물신축 - 공개경쟁입찰>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변경)	취득 (변경) (설치)	공작물	23	367.00	5,767,000
					- 목적 및 용도 : 6·25 참전국 상징 조형물 설치로 감사와 자유·평화의 가치 전달 - 대상지 : 종로구 세종로 1-68 - 사업기간 : '24. 4월 ~ '26. 4월 - 소요예산 : 5,767,000천원 - 사업규모 : 공작물 367.00㎡ - 기준가격 명세 : 공작물 5,767,000천원 - 계약방법 : <공작물> 제한경쟁입찰(설계, 설치)
백련근린공원 데마형 복합활용공간 조성	취득 (신축 등)	건물	1	317.00	1,950,000
		공작물	1	128.00	1,857,000
					- 목적 및 용도 : 백련산 인프라와 연계한 도시숲 체험형 복합활용공간 조성 - 대상지 :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41(산림치유센터), 은평구 응암동 산 7-266(전망대) - 사업기간 : '23. 1월 ~ '27. 12월 - 소요예산 : 3,807,0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317.00㎡, 공작물 128.0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1,950,000천원, 공작물 1,857,000천원 - 계약방법 : <건물 등 신축> 공개경쟁입찰(설계, 공사)

사업명	구분	내역			세부내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거점형 신림역가시설 조성	채득 (신축)	건물	1	600.00	3,030,000
- 목적 및 용도 :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신림자연센터 신축 - 대상지 : 은평구 구산동 산 139-1 - 사업기간 : 25.1월 ~ ' 26.12월 - 소요예산 : 3,030,0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600.0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3,030,000천원(신축비) -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설계,공사)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채득 (신축)	건물	18	1,626.00	12,482,857
- 목적 및 용도 :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숲속의 집 신축 - 대상지 : 관악구 신림동 산 117-24 - 사업기간 : ' 24. 6월 ~ ' 27. 5월 - 소요예산 : 12,482,857천원 - 사업규모 : 건물 1,626.0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12,482,857천원(신축비) -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설계,공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학사 증축	채득 (신축)	건물	1	6,627.16	37,195,628
- 목적 및 용도 :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하여 기숙사 수용률 제고하고자 국제학사 추가 건립 - 대상지 : 동대문구 전농동 694 서울시립대학교 내 - 사업기간 : 24. 6월 ~ ' 29. 9월 - 소요예산 : 37,195,628천원 - 사업규모 : 건물 6,627.16㎡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37,195,628천원 -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설계,공사)					

사업명	구분	내역			세부내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서울시·국세청 간 재산교환 및 사업영등포 실버케어센터 건립 (변경)	채득 (변경) (교환 및 신축)	토지	1	3,119.70	24,701,704
		건물	2	4,373.76	542,424
		건물	1	4,441.00	22,794,356
		토지	1	3,300.20	15,679,250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사업	채득 (교환 및 신축)	토지	11	11,264.00	21,593,088
		건물	1	35,290.00	187,000,000
		토지	23	12,425.00	23,641,941

- 목적 및 용도 :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재산교환 및 실버케어센터 건립
 - 대 상 지 : (취득) 영등포구 문래동이 23-1(처분) 구로구 고척동 350-2
 - 사업기간 : ' 23. 6월 ~ ' 29. 6월

- 소요예산 : 47,799,435천원
 - 사업규모 : (취득) 토지(교환) 3,119.70㎡, 건물(교환) 4,373.76㎡

건물(신축) 4,441.00㎡
 (처분) 토지(교환) 3,300.20㎡

-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교환) 24,701,704천원,
 건물(교환) 542,424천원
 건물(신축) 22,794,356천원

(처분) 토지 15,679,250천원

- 계약방법 : <토지 건물교환> 협의(잠정평가),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설계, 공사)

- 목적 및 용도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내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토지교환 및 전문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 대 상 지 : 광장동 307-3 일대

- 사업기간 : ' 20. 9월 ~ ' 30. 12월

- 소요예산 : 187,000,000천원

- 사업규모 : (취득) 토지 11,264.00㎡, 건물 35,290.00㎡

(처분) 토지 12,425.00㎡

-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교환) 21,593,088천원, 건물(신축) 187,000,000천원
 (처분) 토지(교환) 23,641,941천원

- 계약방법 : <토지교환> 협의(공시지가),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설계, 공사)

사업명	구분	내역				세부내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서울공공한옥 재산교환 (시 ↔ SH)	취득 (교환)	토지	2	532.40	2,264,185	- 목적 및 용도 :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 차원의 재산교환으로 문화유산 가족의 관리·활용 효율성 제고 - 대상지 : (취득) 종로구 계동 72 외 1필지 (처분) 종로구 가회동 35-2 외 4필지 - 사업기간 : '25. 3월 ~ '26. 1월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규모 : (취득) 토지 532.40㎡, 건물 128.93㎡ (처분) 토지 636.00㎡, 건물 206.27㎡ -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2,264,185천원, 건물 1,542,000천원 (처분) 토지 2,767,317천원, 건물 1,531,849천원 - 계약방법 : 경쟁평가에 의한 교환(교환차액은 현금 납입)
		건물	1	128.93	1,542,000	
	처분 (교환)	토지	5	636.00	2,767,317	
		건물	3	206.27	1,531,849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부지 매각	처분 (매각)	토지	4	1,016.10	4,006,431	- 목적 및 용도 : 서대문구 복합형사 건립 요청에 따른 사유지 매각 - 대상지 : 서대문구 홍은동 425 외 3필지 - 사업기간 : '25. 6월 ~ '26. 5월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규모 : 토지 1,016.1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4,006,431천원 - 계약방법 : <토지 매각> 수의계약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 및 이에 따른 예치금 감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
- 나. 운용규모 : 834,041백만원(당초 계획 대비 11,269백만원 감소)
-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 변경 (A)	2차 변경(안) (B)	증감 (C = B - A)
합계		845,310	834,041	△11,269
	기타회계전입금	285,367	285,367	0
	이자수입	40,770	29,501	△11,269
	예탁금원금회수	80,000	80,000	0
	예치금회수	439,173	439,173	0

< 지출계획 >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1차 변경 (A)	2차 변경(안) (B)	증 감 (C = B - A)	증 감 율 (D = C / A)
합 계		845,310	834,041	△11,269	△1.3%
효 율 적 재 정 운 영		-	150,000	150,000	(신규)
	공 사 · 공 단 상 환 지 원	-	150,000	150,000	(신규)
	서 울 교 통 공 사 출 자 지 원	-	150,000	150,000	(신규)
	출 자 금	-	150,000	150,000	(신규)
재 무 활 동		845,045	683,731	△161,314	△19.1%
	보 전 지 출	845,045	683,731	△161,314	△19.1%
	여 유 자 금 예 치	290,869	129,015	△161,854	△55.6%
	예 치 금	290,869	129,015	△161,854	△55.6%
	지방 채 차 입금 원 금 상 환	419,746	419,746	-	-
	지방 채 차 입금 이 자 상 환	134,430	134,970	540	0.4%
	행 정 운 영 경 비	265	310	45	17.0%

○ 수입계획 변경

- 공공예금 금리 하락 및 순세계잉여금 적립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수입 11,269백만원 감소
 - ▶ 이자수입 : (당초) 40,770백만원 → (변경) 29,501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으로 출자금 150,000백만원 증가
 - ▶ 출자금 : (당초) 0백만원 → (변경) 150,000백만원
-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적용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상환액 540백만원 증가
 - ▶ 차입금 이자상환 : (당초) 134,430백만원 → (변경) 134,970백만원
- 모집공채 추가 발행에 따른 수수료 45백만원 증가
 - ▶ 기본경비 : (당초) 265백만원 → (변경) 310백만원
- 이자수입 감소 및 출자금 증가 등 수입·지출 변동사항 반영하여 연도 말 예치금 161,854백만원 감소
 - ▶ 예치금 : (당초) 290,869백만원 → (변경) 129,015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이지나 (☎ 2133-6866)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발전시설 현물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16.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나. 현재 시에서 소유·운영 중인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8개소와 서울에너지공사 부지 내에 설치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10개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 상 :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 1,883백만원 (시설용량 총 531.29kW)

구 분	수량	시설용량 (kW)	출자규모 (백만원)	비고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학교 태양광 등)	8개소	397.78	545	소규모태양광 포함 (1개소)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10개소	133.51	1,338	
합 계		531.29	1,883	

※ 2개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출평균액으로 출자규모 산정(세부내역 불입 참조)

나. 출자 필요성

-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8개소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며
- 서울에너지공사 부지 내(건물 등)에 설치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는 2022년 성능검증 종료 후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 지속적인 신기술 홍보 등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실증단지 운영 대행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 소유자인 서울에너지공사로 현물 출자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이재은 (☎ 2133-3572)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본 사업은 서울시 내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도시재생사업 자산을 先매입하여, 민간 부진사업장의 참여를 촉진하고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 기금이 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공간지원리츠2호”를 설립하는 사업임.
- 나. 본 사업은 현재 자금소진이 예상되는 “공간지원리츠1호”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매입한 자산은 10년 간 주거수요자 및 임차 상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다.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낙후 도심에서 정책·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며 중앙정부 재원의 활용이 가능한 리츠 설립을 위해 「지방 공기업」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대상

- 1) 기관명칭 :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 총사업비 : 3,000억 원
- 3) 총출자금 : 600억 원
- 4) 출자자 현황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 300억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300억 원
- 5) 사업기간 : 2026.1월 ~ 2039.3월

나. 사업방식

- 1) 투자방식 : 자금을 선(先)조성하고 투자자산을 후속매입
- 2) 매입대상 : 서울시 내 모아주택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자산 등
- 3) 자산운영방식
 - 임대조건 : 임대기간 10년
 - 임대료수준 : 시세의 90% 이하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운용본부 정태상/김형원 (☎ 3410-8569/8571)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음
- 나.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채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현금 출자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제안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출자규모 : 1,500억 원 (공사채 상환 1,500억 원)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자 현황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 1,500억 원

다. 출자의 필요성

- 서울 지하철은 하루 7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나,
- '24년 기준 수송원가(1,853원) 대비 평균운임(998원)이 53.9%에 불과하여 지하철 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부담('24년 4,135억 원)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이에,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현금출자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1부. 끝.

※ 작성자 : 교통실 도시철도과 김세훈 (☎2133-4334)

붙임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 **설립일자 및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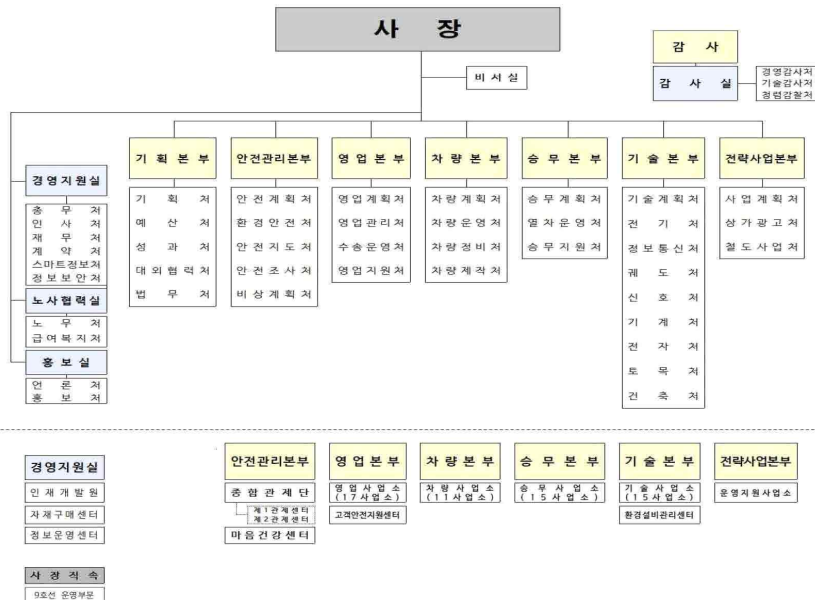
설립일자	· 2017. 5. 31.	 서울교통공사 Seoul Metro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설립근거 및 목적**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공사설립)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 3. 9.)
목 적	· 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및 부대사업 ·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 **조직 및 인력** ('25. 9. 30. 기준)

조 직	· (본 사) 사장·감사·7본부·5실·46처 · (현 업) 1부문·1원·1단·7센터·59사업소
인 력	· (정 원) 16,606명 / (현 원) 16,856명 ※ 9호선 운영부문(정원 297 / 현원 319명)은 별도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297명)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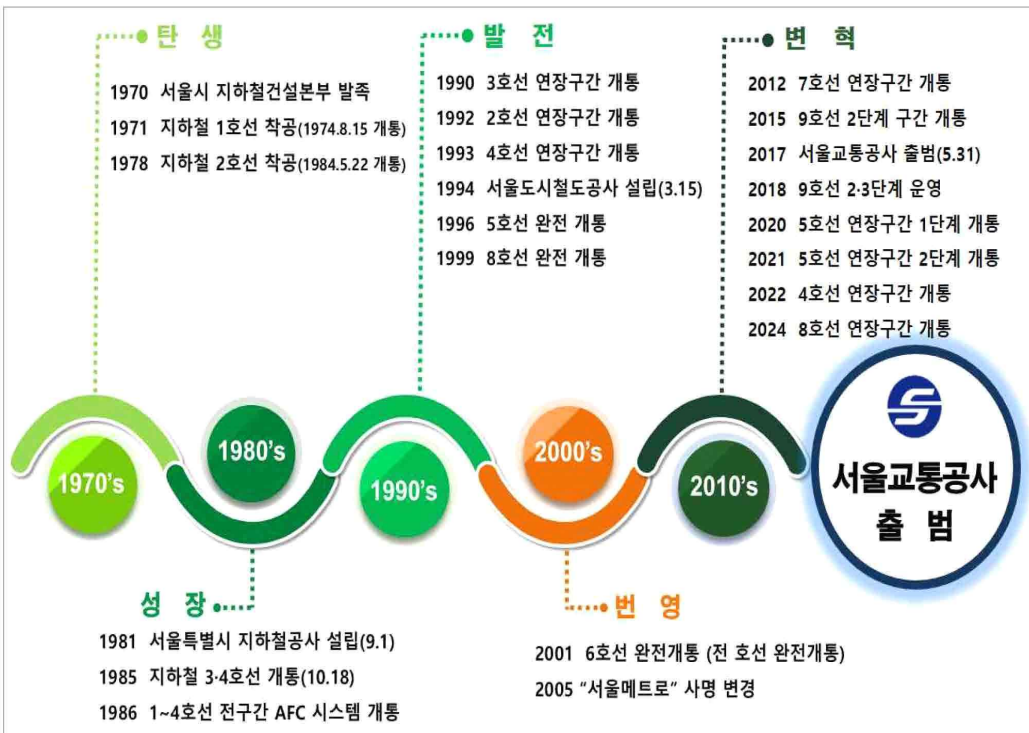
□ 영업현황

('25. 9. 30. 기준)

구 분	영업연장	역 수	전동차	수송인원	운수수익
계	299.2km	276역	3,667칸	6,645천명/일	4,442백만원/일
1호선	7.8	10	160	425	236
2호선	60.2	50	794	1,977	1,466
3호선	38.2	34	490	811	521
4호선	31.1	26	520	787	502
5호선	59.8	56	640	949	614
6호선	36.4	39	312	518	328
7호선	46.9	42	577	852	573
8호선	18.8	19	174	326	202

※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기준(위수탁구간 운수수입 제외)

□ 연 혁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지역상생교류사업’은 서울시민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 농·수·특산물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지원하여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나. 서울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 주민 간의 상호 교류 촉진 등 지역 간 상생 교류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다.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필요성

-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교류 협력 사업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 지역상생 교류사업은 도농간 교류, 지역상생, 유통 및 지역경제 등 민간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필요한 바,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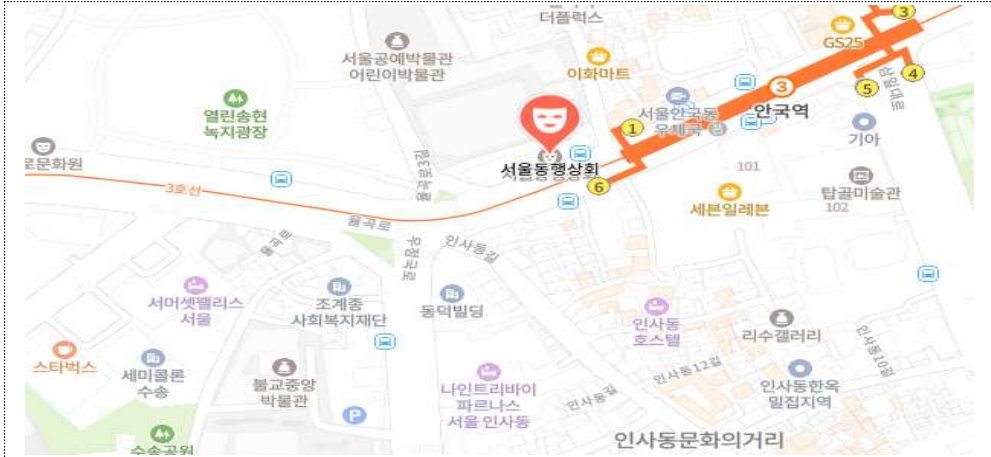
다. 주요 위탁사무

-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입점 업체 선정·관리 및 운영, 정기 기획전 기획·운영 등 온오프 라인 판로지원 및 유통망 확대
- 지역 상생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지원
- 지역 상생 교류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그 밖에 지역 상생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동행상회(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1층)

○ 위 치 도



○ 개관일자 : ' 18.11.3.

○ 규 모 : 413m²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6.4.1.~' 29.3.31.)

바.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사. 소요예산 : 1,355백만원('25년 예산)

아. 심의결과 : 적정('25년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상호 간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6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행정국 대외협력과 홍은지 (☎ 2133-2776)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풍물시장’은 과거 동대문운동장 일대 노점 형태로 영업하던 상인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자 2008년 동대문 신설동 서울교육청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조성된 공공 관리형 시장임
- 나. 최초 약 800여개 점포가 입점하여 전통 골동품·생활용품 등 판매, 한국의 생활사 자료 및 체험관을 선보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시 특화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다. 그러나 기존 노점 상인들의 전문역량 부족에 따라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낮은 접근성, 협소한 점포 등 지리적·구조적 한계에 따라 시장 활성화 또한 정체된 상황임
- 라. 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풍물시장’ 사업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및 제11조(사무의 위탁)

○ 추진경위

- ’ 07.08.21. :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이전 협의
- ’ 07.10.11. : 청계천풍물시장 위탁관리업체 선정
- ’ 07.10.~’ 08.03 : 서울풍물시장 신축 건축공사
- ’ 08.04.26. : 서울풍물시장 이전 및 개장

- 위탁현황

위탁기간	수탁업체	협약체결일	비고
'07.10.11.~ '10.10.10.	(주)에스마름	'07.10.11.	신규
'10.10.11.~ '11.11.23.	(주)코스모리치	'10.09.17.	임금체불 등 사유로 협약 해지
'11.11.24.~ '11.12.31.	(주)대호지앤씨	'11.11.23.	협약해지에 따른 한시적 위탁
'12.01.01.~ '13.10.10.	(주)백상코퍼레이션	'11.12.26.	당초 협약 기간 중 잔여기간
'13.10.11.~ '16.12.31.	(주)백상코퍼레이션	'13.10.10.	재위탁(공모)
'17. 1. 1.~ '19.12.31.	(주)백상코퍼레이션	'16.12.23.	재위탁(공모)
'20. 1. 1.~ '22.12.31.	(주)백상코퍼레이션	'19.12.30.	재위탁(공모)
'23. 1. 1.~ '25.12.31.	(주)백상코퍼레이션	'22.12.31.	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점포임대차 계약 만료(' 21.5.26. ~ ' 26.5.25.)에 따른 신규 입찰 시행 예정으로 원활한 입찰계약의 진행 및 향후 700여개 점포, 500여명 상인들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인 노하우 및 관리 인력이 필요함
- 더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관리 및 품물시장 고유의 특색 있는 시장 운영 등을 위해 해당 경험 풍부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위탁사무내용

○ 위탁대상 사무 : 서울품물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

- 시설물(부대시설, 비품·장비 포함) 유지 및 안전관리
- 점포관리, 임대차 계약, 관리비용 징수, 공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교부 및 징수 독려 등
- 시장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점포재배치, 마케팅 홍보, 관광객유치 등)
-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 상인 입주 및 그 관련 사항
-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시장 주변의 환경 정비 및 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 위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서울품물시장)
- 규모 : 토지 6,535㎡, 연면적 8,513.76㎡

- 시설현황 : 총 821점포, 지상2층, 상인교육장(231.87㎡)
- 기타시설 : 방재실·야외무대·재활용수집장 등(407.84㎡)
- 마.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 26.1월 ~ ' 28.12월)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735백만원(' 26년)
 - 민간위탁금 : 1,734,733천원
 - 인건비 : 897,813천원
 - 운영비 : 215,720천원
 - 시설물 유지보수 : 241,200천원
 - 사업부대경비 : 380,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고범주 (☎2133-5559)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며, 위탁기간이 ' 26. 5. 31.자로 만료될 예정임
- 나. 소각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모 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 나. 위탁기간 : 3년 (' 26년 6월 1일 ~ ' 29년 5월 31일)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 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 필요성
 - 생활폐기물의 반입·처리 등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라.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전력 생산 및 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가스, 폐수 등)의 설계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업무(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마. 시설개요

○ 시설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부지면적 : 63,818 m^2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00톤/일(300톤/일 × 3기)

○ 처리권역 : 8개 자치구(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 주 용 도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소각 처리 및 소각열 회수를 통한 자원화

○ 주요장비 : 소각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비정산비 기준) : 25,307백만원('26. 6.~'29. 5.)

(1차년도 : 8,196백만원, 2차년도 : 8,433백만원, 3차년도 : 8,677백만원)

아. 기대효과

○ 폐기물 소각 및 자원회수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업의 전문지식, 기술력, 설비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성능 유지 가능

○ 계약에 따른 성과지표(성과관리 기준 등)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 자원회수시설 운영이라는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민간에 맡김으로써, 서울시는 정책 수립 및 감독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음

자. 20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5.09.2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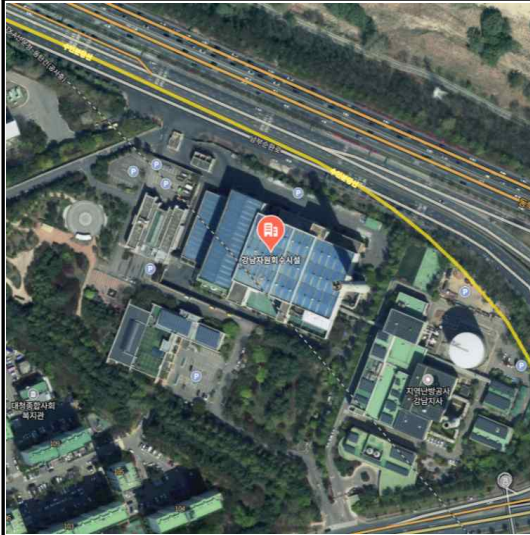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김태현(☎2133-9953)

붙임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 시설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시설 위치



시설 전경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며, 위탁기간이 ' 26. 5. 31.자로 만료될 예정임
- 나. 소각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모 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
- 나. 위탁기간 : 3년 (' 26년 6월 1일 ~ ' 29년 5월 31일)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 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 필요성
 - 생활폐기물의 반입·처리 등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전력 생산 및 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가스, 폐수 등)의 설계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업무(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라. 시설개요

○ 시설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 부지면적 : 16,914 m^2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 × 2기)

○ 처리권역 : 3개 자치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주 용 도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

○ 주요장비 : 소각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발전설비 등

마. 위탁기간 : 3년 (' 26.06.01. ~ ' 29.05.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비정산비 기준) : 21,608백만원(' 26. 6.~' 29. 5.)

(1차년도 : 6,996백만원, 2차년도 : 7,201백만원, 3차년도 : 7,411백만원)

아. 기대효과

○ 폐기물 소각 및 자원회수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업의 전문지식, 기술력, 설비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성능 유지 가능

○ 계약에 따른 성과지표(성과관리 기준 등)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 자원회수시설 운영이라는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민간에 맡김으로써, 서울시는 정책 수립 및 감독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음

자. 20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5.09.2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이수연(☎2133-3682)

붙임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	----------------------

○ 시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시설 위치	시설 전경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는 기능이 유사한 두 개의 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기관(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및 커리어플러스센터)을 통합하여 설립된 신규 민간위탁기관으로,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개발, 현장훈련, 사후지도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나.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 등을 대상으로 본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 나. 센터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 규 모 : 연면적 975.64㎡(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5층)
 - 지원시설 :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강당 등
 - 위치도



- 다. 운영인력 : 30명(센터장 1, 사무국장1, 팀장 3, 일반직원 25)

라. 위탁기간 : 2026. 4. 1.~2028. 12. 31(2년9개월)

마.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바. 위탁사무

- 장애인 일자리 연계 : 취업기관 간 정보·인력 연계, 직업능력평가 등
 - 장애인 일자리 개발 :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구인업체 개발 등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취업장애인 사후관리, 장기고용전략 수립 등
 - 기타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등
- ※ ' 13.8.7 준공된 행복플러스센터(연면적 1,669.48㎡) 건물관리 위탁 포함

사.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장애인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장애 특성별 맞춤형 취업상담·알선, 구인업체 발굴, 사례 관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케 함이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아. 소요예산 : 2,719백만원(2026년)

자. 심의결과 : 적정(' 25년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장애인 고용촉진 추진)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정태영 (☎2133-7965)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은 마포구 권역의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많은 아동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통해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사회복지시설임

나. 거점형 키움센터는 초등아동의 자유로운 놀이와 쉼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자원을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초등돌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키즈카페를 결합하여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다.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놀이와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7-38 일대
- 규 모 : 지상 3층, 전용면적 999.82㎡(층 면적 1,418.02㎡)
- [키움센터] 656.72㎡(199평) / [키즈카페] 343.1㎡(104평)
- 조성방법 : 기부채납시설 활용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키움센터] 아동 110명 / 종사자 12명
- [키즈카페] 아동 34명(회차별 인원) / 종사자 4명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운영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양육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
- 위탁기간 : 5년(2026. 4. ~ 2031. 3.)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 25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25.9.24.)
- ' 26년 소요예산(안) : 1,643백만원
- [키움센터] 1,231백만원 / [키즈카페] 412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및 제7조의 2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민간위탁 필요성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의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초등학교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 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 원의 체계적인 연계·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
 - 서울형 키즈카페도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정유진 (☎2133-4819)

김유나 (☎2133-4808)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사회복지시설)임
- 나.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목동야구장점)은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기 관 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 위 치 :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동야구장 내 1층)
- 규 모 : 전용면적 315.8㎡, 지상 1층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아동 36명(회당) / 종사자 5명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조직·인사관리, 회계·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 5년(2026.4. ~ 2031.3.) ※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 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25.9.24.)
 - ' 26년 소요예산(안) : 313백만원(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 인건비 : 127백만원 / 운영·사업비 : 84백만원 / 기자재비 : 102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

폐의 설치 및 운영)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운영 사무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김유나 (☎2133-4808)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사회복지시설)임
- 나.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길동생태공원점)은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기 관 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 위 치 : 강동구 천호대로 1298(길동생태문화센터 내 1층)
- 규 모 : 전용면적 280㎡, 지상 1층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아동 32명(회당) / 종사자 4명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조직·인사관리, 회계·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 5년(2026.4. ~ 2031.3.) ※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5.9.24.)
 - '26년 소요예산(안) : 271백만원(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 인건비 : 109백만원 / 운영·사업비 : 72백만원 / 기자재비 : 90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

폐의 설치 및 운영)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운영 사무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기구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이동요 (☎2133-4804)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은 ' 17년 기 조성된 광장을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과 여가 선용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운동공간' 과 '도시정원' 이 결합 된 복합공간으로 개선하고,
- 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의 창의적 기획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 시설

- 시설명 :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77 일대
- 규모 : 광장 18,772.3㎡, 연면적 5,912.32㎡, 생태면적 : 5,650㎡
- 시설현황 : 도시계획시설(광장)
- 주요시설 : 체육시설, 조경시설, 종합안내소 및 부대시설

나. 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위탁)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다. 위탁 기간 : 3년 (2026. 7. 1. ~ 2029. 6.31.)

라. 위탁 업무의 범위

- 체육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시민의 건전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 정원시설 운영 및 녹지환경 관리 (시민 참여형 정원가꾸기, 원예체험 등 정원 프로그램 운영과 계절별 식재·조경 관리 등 휴게환경 조성)
- 광장 환경 조성 및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조경 관리, 주차장 관리 등)
- 시민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용 독점 방지, 공공질서 확보 등)
- 사용 및 이용 관련 업무 (광장 사용허가, 사용료·이용료 징수 및 회계 관리, 민원 처리)

마.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5. 9.24.)

바. 소요예산(안) : 475,986천원(1차년도, 2026. 7. 1. ~ 12.31.)

사. 기대 효과

- 공공 서비스 증진: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문화 및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광장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
-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구축: 광장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 공간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
- 행정 효율성 제고: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위탁)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즈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위탁운영)

▶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항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박경호 (☎2133-0421)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나.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6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6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100백만원)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정원도시국 조경과 이영선 (☎2133-2124)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나.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6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6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100백만원)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정원도시국 조경과 이영선 (☎2133-2124)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나.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6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6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50백만원)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정원도시국 조경과 이영선 (☎2133-2124)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나.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6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6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50백만원)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정원도시국 조경과 이영선 (☎2133-212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영리사업인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구로구 개봉동 503 세이지움개봉주거안심지원센터 제2층 제217호
- 사용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180.7544㎡, 건물 연면적 1030.41㎡
- 사용허가 기간 : 2026.1.1. ~ 2030.12.31.(5년)
- 예상 감면액 : 209,524천원(월 3,492천원)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인 시민 주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SH에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은 SH의 비영리 사업으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5항 제3호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5.9.25.)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조건사항〉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것

※ 작성자 : 주택실 주택정책과 남은주 (☎2133-798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량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영리사업인 ‘중량주거안심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중랑구 상봉동 503 세이지움상봉 제에스에이치
주거안심센터동 제2층 제211호
- 사용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95.5764㎡, 건물 연면적 1052.5322㎡
- 사용허가 기간 : 2026.1.1. ~ 2030.12.31.(5년)
- 예상 감면액 : 242,426천원(월 4,040천원)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인 시민 주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SH에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은 SH의 비영리 사업으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5항 제3호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5.9.25.)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조건사항>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것

※ 작성자 : 주택실 주택정책과 남은주 (☎2133-798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린동, 영풍문고 옆)
- 면적: 대지면적 1,070㎡, 연면적 11,752㎡
- 목적: 국제기구 활동 지원
- 규모: 지하 4층, 지상 15층
- 재산관리관: 외국인이민담당관(건물), 주차계획과(토지)

나. (서울투자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울글로벌센터빌딩 6·7층)
- 면적: 토지 90.34㎡, 건물 991.59㎡
- 목적: (재)서울투자진흥재단(市출연기관)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사무공간)
- 당사자: <허가부서> 외국인이민담당관 / <수허가자> (재)서울투자진흥재단
- 허가기간: 2025. 10월 ~ 2030. 9월(5년)
- 무상사용기간: 2026. 1월 ~ 2030. 9월(4년 9개월)

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 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 요건에 해당됨.
-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국제기구” 중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단의 공공성 및 정책적 필요성 고려시, 사용료 감면 타당

※ ‘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의견을 득함.

○ 심 의 일: ‘25. 9. 25.(목)

○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재산관리과, ’ 25.10.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출자·출연기관 등이 비영리사업을 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기 바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이재상 (☎ 2133-5078)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1.1.)됨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나. 서울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계획의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 나. 공업지역 유형 구분 및 유형별 관리방향
- 다. 공업지역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
- 라. 공업지역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산업정비구역) 기본방향 및 계획기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붙임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주요내용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남주연 (☎2133-832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대상지는 ICT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어 산업거점으로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안)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신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서초구 양재1·2동, 강남구 개포4동 일원	1,578,710㎡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신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ICT기업의 발전·육성을 지원하는 지구로 조성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가. 주민 의견청취 등

- 공람기간 : 2025. 7. 28.~8. 12. (14일간)
- 주민의견 : 의견 없음 / 관계부서 의견 : 1건 ※ 불임참조

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25. 8. 26.(강남구) / 2025. 9. 4.(서초구)
- 결 과 : 원안동의

다. 구의회 의견청취

- 일 시 : 2025. 9. 5.(강남구) / 2025. 9. 8.(서초구)
- 결 과 : 원안가결 / 원안채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진흥지구 기본 요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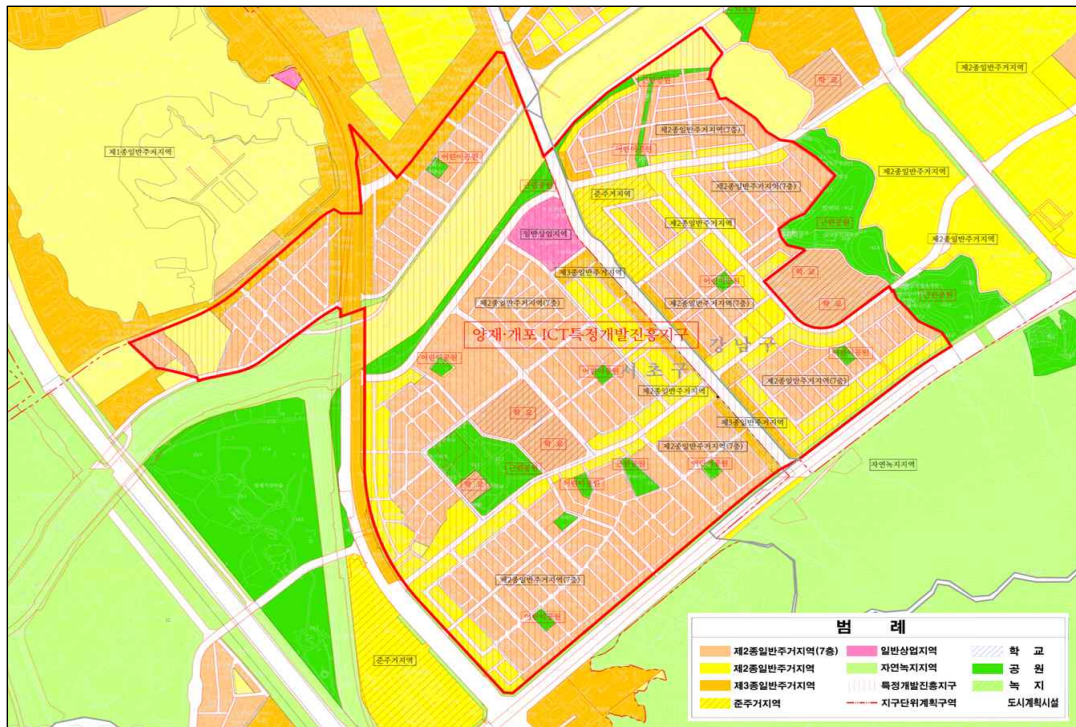
라. 기 타 : 진흥계획 승인 및 고시(' 24. 10.)

-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1부.
2.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윤휘경(☎ 2133-8333)

붙임 1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도



붙임 2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	-------------

- 주민의견 : 의견 없음
○ 관계부서 의견 : 1건

부서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 시 계획과 (서울시)	- 대상지와 인접한 양재·우면동 일대의 'AI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4.11.27.)와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 지구 지정 목적을 효과적 달성 하도록 추진 - 주택정비사업 등 현황 지속 점검 필요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구 운영 현황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하도록 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 안	
변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기존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일대의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고, 구역 확대를 통해 성수 준공업지역 전역을 아울러 IT, R&D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성수 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성동구 성수2가 277~28번지 일대	539,406.4	서울시고시 제2010-21호 (2010.01.28.)
변경	성수IT 문화콘텐츠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성동구 성수동 일대	2,051,234.0 (증:1,511,827.6)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면적 증가 539,406.4㎡ → 2,051,234㎡ (증:1,511,827.6㎡)	· 기존 개발진흥지구의 권장업종이 성수 준공업지역 전반에 입지해 있어 기존 구역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 산업생태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가. 주민 의견청취 등

- 공람기간 : 2024. 3. 1.~3. 14. (14일간)
- 주민의견 : 1건 / 관계부서 의견 : 3건 ※ 불임참조

나. 구의회 의견청취

○ 일 시 : 2024. 4. 18.

○ 결 과 : 원안동의

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24. 11. 5.

○ 결 과 : 원안동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진흥지구 기본 요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진흥계획 승인 및 고시(' 13. 1.)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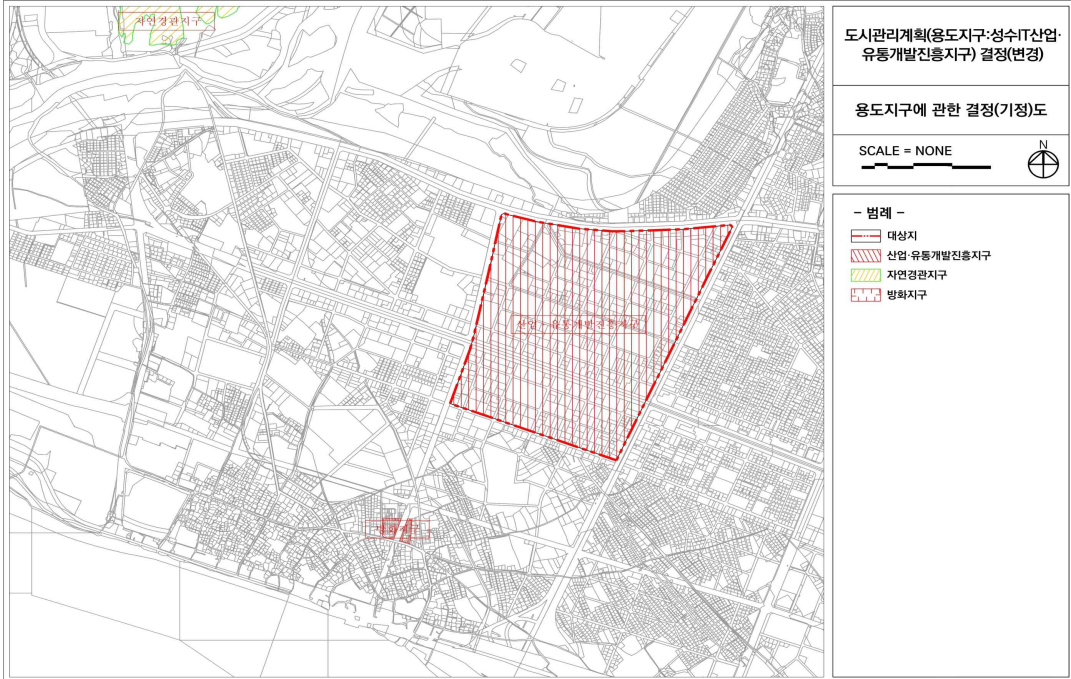
2.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윤휘경(☎ 2133-8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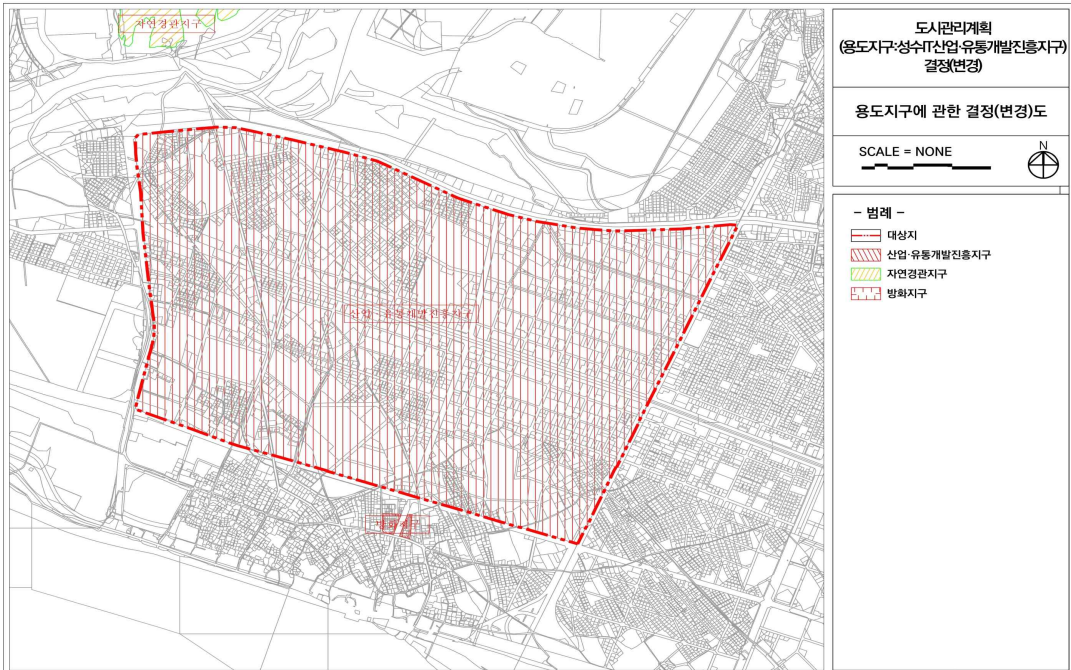
붙임 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도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붙임 2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 주민의견 : 1건

부서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 시 계획과 (서울시)	· '디자인'에 한정된 근시안적 접근보다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동개발진흥지구'로 확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권장업종에 신산업 업종을 추가 필요	· 현재 진흥지구 내 디자인, 미디어 관련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IT기술 활용한 업종이 집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음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으로 지정함	반영

○ 관계부서 의견 : 3건

부서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 시 계획과 (서울시)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조서 및 도면 작성 필요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이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협의 절차 이행 바람	·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서와 도면 작성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협의 절차 이행하겠음	반영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서울시)	· 진흥지구 지정 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관련기준에 정합토록 진흥계획 제시 필요 · 진흥지구 확대계획 관련 권장업종의 성장률(종사자수 증가율) 등은 최근 5년 자료로 제시 필요	·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 진흥지구 지정 및 수립요건에 대한 최근 5년 자료로 제시하겠음	반영
학교지원과 (서울시 교육청)	· (학생배치계획) 현 단계에서 학생 배치 판단 불가 · (교육환경보호) - 해당 사업지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협의 시 적극 참여 필요 - 사업 추진 시 통학안전 침해 방지를 위해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기타사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협의 사항 또는 사업 변경사항(학생배치 관련) 등이 발생할 경우 재협의 필요	·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지자체와 협의 하겠음 ·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관련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적극 진행하겠음 · 사업에 대한 추가 협의사항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재협의 하겠음	반영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한국체육대학교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대 학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111,902.3	-	111,902.3	1984. 8. 25. (건고시 제326호)	자연녹지지역

나.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구역계획

구역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①	29,528.0	-	29,528.0	
		②	②	13,565.0	-	13,565.0	
		③	③	29,980.3	-	29,980.3	
		-	⑤	-	증 7,636.0	7,636.0	
	소계			73,073.3	증 7,636.0	80,709.3	
유지	외부활동구역	④	④	25,519.0	-	25,519.0	
		⑤	-	7,636.0	감 7,636.0	-	
	소계			33,155.0	감 7,636.0	25,519.0	
보전	녹지보존구역	⑥	⑥	5,674.0	-	5,674.0	
	소계			5,674.0	-	5,674.0	
합계				111,902.3	-	111,902.3	

- 밀도계획(건폐율)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계획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자연녹지지역	111,902.3	25.0	30.0	23.5	20.1	-	29.6	25.0	30.0	

※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 해당없음

- 밀도계획(용적률)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자연녹지지역	111,902.3	82.0	95.0	78.9	62.2	-	93.9	82.0	95.0	

-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구분	구역면적	조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29,528.0	82.0	95.0	136.9	137.4	-	152.6	+56.0	+57.9	138.0	152.9	○4구역에서 17,100.0㎡ 용적이전받 음
②	13,565.0	82.0	95.0	129.7	129.6	-	164.3	+49.9	+70.0	131.9	165.0	○4구역에서 4,104.7㎡ 용적이전받 음 ○6구역에 서 5,390.3 ㎡ 용적이 전받음
③	29,980.3	82.0	95.0	100.8	38.1	-	100.9	+24.4	+6.3	106.4	101.3	○4구역에서 1,877.0㎡ 용적이전받 음
④	25,519.0	82.0	95.0	0.2	0.2	-	3.1	-79.0	-90.4	3.0	4.6	○1구역으로 17,100.0㎡ 용적 이 전함 ○2구역으 로 4,104.7 ㎡ 용적 이 전함 ○3구역으 로 1,877.0 ㎡ 용적 이 전함
⑤	7,636.0	82.0	95.0	-	-	-	87.8	-77.0	-	5.0	95.0	
⑥	5,674.0	82.0	95.0	-	-	-	-	-81.0	-95.0	-	-	○2구역으로 5,390.3㎡ 용적이전함
합계	111,902.3	82.0	95.0	78.9	62.2	-	93.9	-	-	82.0	95.0	

- 높이 계획

구역	높이(m)		비 고
	기 정	변 경	
①	• 지표로부터 최대 8m~35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5m~35m이하	일부 지역 8m→30m로 변경
②	• 지표로부터 최대 25m~40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5m~40m이하	변경없음
③	• 지표로부터 최대 5m~40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5m~40m이하	변경없음
④	• 지표로부터 최대 5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5~8m이하	일부 지역 5m→8m로 변경
⑤	• 지표로부터 최대 5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30m이하	전체 지역 5m→30m로 변경
⑥	-	-	변경없음

- 변경 건축물 조서

구역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지상/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오륜관(A동)	1,978.1	1,980.3	4,261.1	4,266.5	4,110.9	4,115.3	3/1	3/1	대장 반영
	승리관(B동)	3,052.5	3,054.4	8,429.9	8,433.9	8,333.9	8,343.9	4/1	4/1	대장 반영
	실내수영장	2,570.3	2,642.9	4,113.4	4,201.3	3,592.1	3,680.0	3/1	3/1	대장 반영
	체육과학관	1,694.3	1,727.7	9,068.8	9,102.2	8,396.1	8,429.5	5/1	5/1	대장 반영
	기숙사 (천마생활관)	2,914.3	2,950.4	18,695.8	18,695.8	15,887.3	15,923.4	8(1)	8(1)	대장 반영
	체육진흥원	-	975.0	-	9,885.0	-	4,465.0	-	6/2	신축
②	본관 및 연구실동	2,324.8	3,326.8	9,023.9	15,382.0	8,769.3	13,452.0	4/1	5/1	증축
③	창고	-	16.5	-	16.5	-	16.5	-	1/-	대장 반영
	도서관 (학생회관)	1,461.7	1,475.0	11,431.3	11,437.5	8,847.7	8,867.8	8/2	8/2	대장 반영

구역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지상/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④	운동장 부대시설	19.4	960.0	354.9	13,528.0	19.4	743.0	1/1	1/1	증축
⑤	산학협력 복합관	-	3,714.0	-	9,372.0	-	6,705.0	-	4/1	신축
합계		16,015.4	22,823.0	65,380.1	104,420.7	57,962.7	74,741.4	-	-	
		증) 6,807.6		증) 39,040.6		증) 16,778.7		-	-	

3. 입안사유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한 교육 연구시설(체육진흥원, 산학협력복합관 등) 신·증축을 위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학교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5. 8. 14. ~ 8. 28.
- 계 재 신 문 :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 열 략 장 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의견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 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기법 (LID)과 유휴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	향후 실시계획 인허가시 반영하겠음	반영
서울 교통공사	[철도보호지구 인접(굴착)공사 관련사항] 1.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 올림픽공원역 간 본선구간 포함)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인접하여 시행되는 건축공사 등 각종 굴착행위 시 인허가 단계에서 철도 시설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와 사전 협의(행위신고 등) 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2. 특히, 지하철 5호선이 인접하여 운행되고 있으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자(건축주 또는 시행사) 부담으로 지하철 안전, 소음진동 영향 등 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대책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인접(굴착)공사 관련사항] 향후 실시계획 인허가 전 서울교통공사와 사전 협의 추진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송파구 맑은환경과	[수질분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설기준에 맞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수질분야] 향후 실시계획 인허가시 반영하겠음	반영
	[지하수 부문] -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굴착지름이 75mm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행위를 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공사 시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지하수 관정 설치 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종료 시에는 제9조의3 및 제15조에 따라 종료신고 후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지하수 부문] 향후 실시계획 인허가시 반영하겠음	반영
송파구 도시교통과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생기숙사 면적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이 80,000㎡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임	향후 실시계획 인허가시 반영하겠음	반영
송파구 도시계획과	[①, ⑤구역 높이계획] 양재대로에서의 스카이라인, 성내천 수변 공간과의 경관 조화 및 학교 내 인접한 기존 건축물(기숙사 등)의 최고 높이를 고려하여 ①, ⑤구역 모두 최대 30m이하 지역으로 관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①, ⑤구역 높이계획] ①, ⑤구역은 최대 30m이하 지역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성내천 산책로에서의 수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진흥원 건축물 높이 계획 시 고층부(층고를 감안하여 3층 이상) 벽면한계선 도입 검토, 1층 전면의 50% 이상 투시형 설계 권장하는 방안 검토 필요	실시설계시 벽면한계선 도입 및 1층 투시형 설계 반영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송파구 도시계획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체육진흥원 1층에는 성내천 조망이 가능한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편의시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에 개방 혹은 공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성내천 산책로에서 체육진흥원 접근을 위한 연계 보행통로 신설 검토 필요 [대학 경계부 특성 관리] - 대학 경계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주동 길이 최대 75m 준수 하되 50m를 초과하여 늘어난 입면적의 1/2을 지상부에 개구부 등으로 확보 ▶ 단, 체육진흥원의 경우 입지특성 상 지형여건, 대지 형상*을 고려하여야 하였을 때 건축계획 여건이 불리하며 기존 시설인 캠퍼스 내부 차량통로, 필로티 주차계획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대지형상: 대지 경계부 성내천 산책로와 한체대 대지 간 4m단차, 하천부지 인접대지 경계선 요철부분(하천 접근을 위한 계단)으로 인한 건축 가용부지 제한 ⇒ 운영기준에 따른 ‘개구부 형성 기준’ 충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입면 분절 계획 등을 통해 중압감과 차폐감 완화 계획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서울시 운영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전면 폭 산정 관련하여 체육진흥원 연결통로* 부분 건축면적 포함 여부 재확인 필요 *공중(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통행에 사용하는 통로이거나 입체공공보행통로인 경우에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됨(참고: 법제처 해석례 21-0263)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가로활성화 용도 계획은 없으나, 체육진흥원 1층 성내천 조망이 가능한 학생지원시설(면적 200㎡)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겠음 - 향후 실시설계시 성내천 연계 보행통로 신설하겠음 [대학 경계부 특성 관리] - 주동길이 75m 준수하되 50m를 초과하여 늘어난 입면적의 1/2을 지상부 개구부 등으로 확보하고, 내부 차량통로 및 필로티 주차계획을 반영하며, 연결통로(50㎡)는 건축면적에 포함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송파구 도시계획과	[체육시설 개방계획]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를 감안하여 기존 및 증축건축물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계획을 적극 검토 요청하며, 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계획,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 구체화 필요 ▶ (도시계획과) 2030서울생활권계획(가락지역생활권)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공급은 서울시 평균에 미달한 실정임. ▶ (생활체육과) 우리구 구립체육문화회관은 거여동 1개소로 인구 규모에 부족하며, 주민 요구 및 민간체육시설에 부재한 다양한 시설 대관 문의가 많음 *실질적 주민요구 필요시설: 다목적체육관, 골프장, 탁구장, 풋살장, 배드민턴,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개방계획] 기존 및 증축건축물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체육진흥원 개원시 구체적인 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계획,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송파구청 관련부서와 협의 하겠으며, 개방시설에 대해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겠음	반영
	학교시설 추가 개방 요청 ○ 신축 및 증축계획 건축물: 체육진흥원, 산학협력복합관, 천마헬스케어프라자(지하주차장) - 특히, 체육진흥원 내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종목인 스쿼시장, 풋살장, 롤러스케이팅장, 스케이트보드장, 스포츠킴라이밍장, 탁구장, 당구장 시설 ○ 준공 예정 건축물: 다목적체육관(체육행사시), 골프연습장 ○ 기존 건축물: 수영장, 실내빙상장, 체육과학관(테니스장 등), 오륜관(핸드볼장, 행사시), 승리관(배드민턴장) 필승관(다목적실: 요가, 필라테스, 무용실 등) ○ 운동장	향후 체육시설 개방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하여 송파구와 협력적 관계 구축하겠음	반영
	[그린캠퍼스 계획] - 인접한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하천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도시계획시설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친환경 계획 요소 도입 검토 필요 - 증축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방안, 운동장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빗물 관리방안(LID, 저영향개발) 도입 등	[그린캠퍼스 계획] 태양발전 시스템, 지열에너지 시스템 등 친환경건축물 계획수립하였음	반영
	[건축물 관리 기준_천마헬스케어프라자] - 지하층에는 채광이 불가능하므로 학생들이 잠시 머무르는 편의시설로만 활용하도록 계획적 고려 필요 - 대학 내 오픈스페이스(외부활동구역) 인공지반 관리 원칙 준수 ▶ 투수율(우수유출) 개선을 위해 토심 1.2m 이상 확보 필요하므로 건축계획에 반영 필요(지하 연결통로 포함) - 천마헬스케어프라자 건축면적 확인 후 밀도 계획(건폐율, 용적률) 반영 필요	[건축물 관리 기준_천마헬스케어프라자] - 지하층에 학생지원시설(탈의실, 샤워실, 웨이트실)로 계획하였음 - 향후 실시설계시 반영하겠음 - 건축면적 960㎡는 기둥과 지붕이 설치된 로얄박스의 건축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확인 하였음	반영 반영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송파구 문화유산과	- 해당 필지는 매장유산 「시굴조사」, 「표본조사」 대상으로 건물 신축 또는 해체공사 시 지하부에 대한 매장유산 전문 조사기관의 매장유산 조사 이행 후 결과보고서를 우리 부서 및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해야 함. - 건물 해체 시행 전 매장유산 조사기관과 지하부 철거 범위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지하부 철거 시 매장유산 훼손을 방지할 것(매장유산 조사 이전 지하부 굴착 금지) - 매장유산 조사 시점은 기존 건물 해체 및 철거 직후, 건축공사 착공신고 전 시행 할 것. - 조사 대상지는 착수시 착수신고서 제출 및 접수 확인 후 실 착수하고,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것. - 매장유산 조사 대상지는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의 허가를 득한 후 지하부에 대한 매장유산 조사를 이행하고 보고서를 우리 부서(문서24 전자문서 송부)와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으로 제출해야 함. - 매장유산 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조치통보 전까지 공사를 중지 할 것. - 매장유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조사 절차를 이행 할 것. - 매장유산 조사기관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GIS시스템, 서울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보존 방안을 확인 후 조사에 착수 할 것. -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는 건축 착공신고 처리 전 반드시 우리부서 사전 협의하여 주시고, 매장유산 조사완료에 따른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조치통보 공문 접수 확인 후 착공신고를 처리하기 바람. - 국가유산청에서는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통하여 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협업포털(e-minwon.go.kr)을 통하여 신청하기 바람[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 국비지원 발굴사업 전담팀(1577-5805)].	- 향후 실시계획 인허가시 반영하겠음	반영

7. 기타

○ 환경성 등 관련사항 검토결과

- (환경성) 녹지훼손·지형변화·경관·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소음, 진동 등)의 저감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통성) 당해 계획으로 인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변경) 실시할 예정임
- (경관성) 학교 내부에 조성하는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의 시설로 경관상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재해취약성) 대상지는 폭우·폭염·폭설 부문이 3등급, 가뭄·강풍이 4등급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우수배제시스템·녹지공간 확보·빗물이용시설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계획하였음

○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는 208,970백만원이며 재원은 체육진흥원은 사업비 확보 완료, 본관 스마트강의실은 현재 국비예비 신청 중이며, 산학협력관과 천마헬스케어프라자는 세부시설조성계획 완료 후 연차적으로 국비신청하여 조달할 계획임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비고
체육진흥원	35,673 (100.0%)	461 (1.3%)	1,383 (3.8%)	10,149 (28.5%)	10,149 (28.5%)	13,531 (37.9%)	-	-	-		
본관스마트 강의실	39,686 (100.0%)	-	905 (2.3%)	1,359 (3.4%)	11,227 (28.3%)	11,227 (28.3%)	14,968 (37.7%)	-	-		
산학협력 복합관	62,044 (100.0%)	-	-	-	1,272 (2.0%)	1,910 (3.1%)	17,659 (28.5%)	17,659 (28.5%)	23,544 (37.9%)	-	
천마헬스 케어프라자	71,567 (100.0%)	-	-	-	-	1,456 (2.0%)	2,186 (3.1%)	20,377 (28.5%)	20,377 (28.5%)	27,171 (37.9%)	
계	208,970	461	2,288	11,508	22,648	28,124	34,813	38,036	43,921	27,171	

○ 추진경위

- '84.08.25.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17.12.28.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 '24.05.0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
- '25.08.07.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
- '25.08.14.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8.28.)
- '25.10.14.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윤효진 (☎ 2133-8412)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1부. 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가톨릭대학교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 교	대 학 (가톨릭 대학교)	합계		61,758.9	증) 511.9	62,270.5	건설부고시 제334호 (1989.6.26.)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부상 면적 반영)
		제1캠퍼스	해화동 90-1번지 일대	61,758.9	증) 511.9	57,234.5		
		제2캠퍼스	동송동 90-1번지 일대			5,036.0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구역계획

캠퍼스분류		구분	명칭	연번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제1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	①	61,758.9	30,194.4	구역 및 소유자에 따른 구분
		유지	외부활동구역		②		11,661.2	
		관리	일반관리구역		③		15,378.9	
	제2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④		5,036.0	이격에 따른 구분
		합계					61,758.9	62,270.5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면적 (㎡)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계획 건폐율 (%)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56,573.5	60	60.0	13.95	12.8	15.4	-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661.0		60.0		-	-		5.0	
	소 계	57,234.5		60.0		12.7	15.2		24.8	
2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4,873.0		60.0		29.0	29.0		4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3.0		60.0		-	-		5.0	

구분		면적 (㎡)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계획 건폐율 (%)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5,036.0		60.0		28.0	28.0		38.9	
합 계		62,270.5	60	60.0	13.95	13.9	16.3	-	25.9	

4) 밀도계획 (용적률)

구분		면적 (㎡)	조례용적률 (%)		사용용적률 (%)		이전 용적률 (%)	계획 용적률 (%)	관리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56,573.5	150	150.0	51.80	47.1	-	54.2	-	60.7	
	제2종일반주거지역	661.0		200.0		-	-	-		60.7	
	소 계	57,234.5		150.6		46.6	-	53.6		60.7	
2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4,873.0		150.0		107.6	-	107.6		1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3.0		200.0		-	-	-		115.0	
	소 계	5,036.0		151.6		104.1	-	104.1		115.0	
합 계		62,270.5	150	150.7	51.80	51.2	-	57.7	-	65.1	

5) 구역별 밀도계획 (용적률)

구역		구역면적 (㎡)	조례용적률 (%)		사용용적률 (%)		이전 용적률 (%)	계획 용적률 (%)	관리용적률 (%)		원화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캠퍼스	①일반	30,194.4	150	150.0	51.80	53.8	-	67.0	-	75.0	-	
	②외부	11,661.2		150.0		2.2	-	2.2		5.0	-	
	③일반	15,378.9		152.1		66.1	-	66.1		75.0	-	
	소 계	57,234.5		150.6		46.6	-	53.6		60.7	-	
2 캠퍼스	④일반	5,036.0		151.6		104.1	-	104.1		115.0	-	
	소 계	5,036.0		151.6		104.1	-	104.1		115.0	-	
합 계		62,270.5	150	150.7	51.80	51.2	-	57.7	-	65.1	-	

6) 높이계획

구역	높이		비고
	기정	변경	
①일반	6층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5m(3층)~30m(6층)이하	기존 건축물 현행 높이 적용
②외부		• 지표로부터 최대 +8m(1층)이하	
③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5m(5층)이하	
④일반		• 지표로부터 최대 +25m(5층)이하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3. 입안사유

- 공부상 면적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노후 건축물 재건축 (대건관대성당동 신축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학교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5. 9. 25. ~ 10. 9.
- 열 람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종로구 도시개발과
- 의견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6. 관련부서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부서	검 토 의 건	조 치 내 용	반영 여부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공통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기법(LID)과 유휴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 - 물순환 및 물재이용 관련 계획 요소는 사업의 초기(구상)단계에서부터 반영을 고려하여 효과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등의 물자원은 사업대상지 내·외 관리용수, 친수용수로 재이용하거나, 인접한 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하수도로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저영향개발기법과 유휴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구 분	부 서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반 영 여부
종로구	건축과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에 관련하여 별도의견은 없으나, 건축관련 인허가 사항은 별도 협의	○건축 인허가 시 별도 협의하겠음	반 영
	교통행정과	○해당 학교 부지는 경사도가 급격하고 보행 통행량이 많으므로, 미끄럼 방지시설 및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고, 일방통행 지정을 통한 보도 확보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함	○건축 허가(변경) 시 급경사지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양방 교행이 어려운 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을 통한 보도 확보 등의 개선방안 제시	반 영
	부동산 정보과	○해당 도시계획시설(학교) 선형은 동성중학교, 동성고등학교와 한 개의 선형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추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도면(CAD) 작성 시 각 도시계획시설(학교)이 분리된 등재용 도면(CAD)을 별도 작성해야 함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학과 동성중·고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 선형이 분리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도면(CAD)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반 영
	문화유산과	○계획 부지 내 (가칭)대건관대성당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국가유산 영향진단 검토 결과, 국가지정유산 경관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통보되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임[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16208(2025.9.30.)호]	○ '현상변경 허가' 대상일 경우,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를 득하겠음	반 영
		○착공 전, 서울시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에 의거 시굴조사(매장유산 유존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를 실시	○착공 전 시굴조사를 실시하겠음	반 영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며, 조사 완료 후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국가유산청의 보존조치를 받도록 안내하기 바람(보존조치 전 착공이 불가하며, 원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	○원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하겠음	반 영
	치수과	○ 하수도분야 일반조건에 따라 배수설비 계획을 검토·수립할 것	○하수도분야 일반조건에 따라 배수설비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 영
		○ 「서울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이므로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임	○사업 인·허가전 해당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와 빗물관리시설에 대하여 사전협의하겠음	반 영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은 추후 건축허가 협의 시 회신 예정	○건축허가 협의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확정 부과되면 납부하겠음	반 영

7. 기 타

○ 공종별 자금조달계획

(단위:백만원)

공종별	총사업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계	50,000	650	19,750	29,300	300	-	-
(가칭)대건관대성당등 신축	50,000	650	19,750	29,300	300	-	-

○ 재원조치

(단위:백만원)

공종별	총사업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계	50,000	650	19,750	29,300	300	-	-
법인 전입	50,000	650	19,750	29,300	300	-	-

○ 공종별 자금사용계획

(단위:백만원)

공종별	총사업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계	50,000	650	19,750	29,300	300	-	-
설계	1,270	650	650	-	-	-	-
감리	1,070	-	500	500	-	-	-
공사	34,040	-	18,000	10,800	-	-	-
기타	13,620	-	600	10,800	300	-	-

○ 환경성 검토 결과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시행 시 저감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통성 검토 결과 당해 계획으로 인해 유발되는 발생교통량은 주요 도로망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경관성분석 결과 학교 외부에서 건축물이 조망되지 않고, 산지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는 높이로 조성하여 경관상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주요 추진경위

- '89. 06. 26. :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
- '04. 07. 20.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최초 결정

- '25. 09. 19.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
- '25. 09. 25.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기 간 : '25. 9. 25. ~ 10. 9. (서울시보)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끝.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노송이 (☎ 2133-8413)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